통권 제57호(2005년 9·10월) 목차

- 02 책을 열며
- ·정부의 평택 농토 강제 수용 결정과 6자 회담 --- 홍근수
- 04 세상톺아보기
- ·'자유민주주의'를 알기나 하나요? --- 강은성
- 07 해외평화운동
- ·우리는 '문어의 머리'를 자르는 투쟁을 하고 있다-DMZ 하와이 --- 유 홍
- 15 오마이피스
- ·Oh my peace! 오 나의 평화! 오늘 나의 평화! --- 변연식
- 16 평화비둘기
- ·미국을 강타한 두 개의 허리케인 --- 최성희(뉴욕)
- 19 기고
- ·검찰청 가는 길 --- 강홍구
- 22 참가기
- ·어여쁜 신부와 뿌듯한 여름휴가를 --- 송원준
- 24 현장
- ·8월, 매향리 폭격은 그쳤지만 --- 최문희
- 26 인물
- ·여섯가지 열쇠로 읽는 배우 권병길 --- 김현진
- 30 포토뉴스
- ·제37차 SCM 즈음 '럼스펠드' 방한 반대 그림자 투쟁
- 32 특별기획
- ·9.19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 동북아 정세 --- 리영희
-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 방안 --- 이철기
- ·한반도 평화협정: 북한 핵문제 근본해결로서의 평화협정의 틀과 윤곽 --- 이삼성

정부의 평택 농토 강제 수용 결정과 6자 회담 -

평통사 상임대표 홍근수

평택 지역의 토지 협의매수 기간이 8월 말로 끝났다. 정부 당국은 토지매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절반이 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물 등을 대조해 본 현지 농민들은 지금 정부의 과반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주민대책위'(팽성대책위, 위원장 김지태)는 9월 12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는 협의매수 결과가 정부 당국의 발표처럼 순조롭지만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참으로 비참하고 처량하기까지 하다.

대책위는 또한 국방부 앞 같은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매수기간인 8월이 지나 강제로 농민의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래서인지 정부당국은 11월 말로 연기했다는 소문이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평택의 농민들은 절대로 '평택 땅을 살아서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백히 요구한다. 평택 농민의 땅을 강제수용하지 말라. 만일 강제수용 시는 지금 농민의 논들이 미군기지 이전·확장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아는 만큼 결사 항전을 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 당국에 대하여 농민들의 저항은 정부가 상상하는 것 보다 아주 엄청 강할 것이다.이 강제수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불행한 일은 정부의 책임일 것이란 것을 명백히 해두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철수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6자 회담에 대한 기대도 허구이다. 9월 19일에 6자회담이 그 마지막 성취로서 북이 모든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 미국은 북에 대해 핵전쟁은 물론 재래식 무기로도 침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미국 대표는 합의의 중요성보다 검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말은 미국 대표가 과연 북이 모든 핵을 파기하겠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어 그런 말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걱정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다. 문서로 약속을 하였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항상 미국이다. 북-미간의 제네바 협약의 경우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엄연히 문서로 약속한 것이지만, 지금에 와서 공산군의 남침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둔하자는 것이고, 또 그 역할을 바꾸자는 것이다. 소위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6자 회담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유회 전의 쾌거였다고들 언론에서 떠들고 있다. 이는 정말

오랫만에 접한 낭보임에 틀림 없다. 북한과 미국의 속성상 그런 공동선언문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들은 모두 일정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날 북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선 경수로 해결, 후 핵포기 조치'가 6자 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말하여 당사국들이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6자 회담의 앞길이 쉽지 않음을 잘 말해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6자 회담에 공을 들이는 대신 한반도에 그렇게 잘 하는 침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 당국은 평택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협의매수절차를 11월 말로 연기했는지 모른다.

'자유민주주의'를 알기나 하나요?

강은성(후원회원)

국가보안법을 읽어 볼 때마다 내 눈에 가장 잘 띄는 구절은 '반국가단체'라는 말과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다. 이 두 구절의 특징은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국민적 공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국가 변란을 기도하는 '반국가단체'를 옹호할 것이며, 그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롭고도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눈 뜨고 그냥 볼 것이냐는 말이다. 국가보안법에 이 말을 넣은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다.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지칭하기 위해 만든 용어란 건 온 국민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 역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라는 의미와는 별도로, 국가보안법의 '꽃'인 제7조 찬양 고무죄가 필요에 따라 정권이 정치범을 양산하는 데 마구 적용하여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정권'안보법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걸 좀 제한해 보자고 1991년 5월 31일 제7차 개정시 삽입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양념으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국보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이 구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구세력들이 국보법을 옹호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국보법이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진 것처럼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장식과 관계없이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가장 망가뜨린 것이 국가보안법이고, 실제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자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파괴한 자가 누구일까? 굳이 4지선다로 물어 보지 않더라도 온 국민에게 설문지 돌려 보면, 반 정도는 전두환을 꼽을 거다. 맞다! 전두환! 그 자는 광주에서 수천 명의 양민을 학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렸는데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기는 커녕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자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괜찮다고? 이

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므로,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당근 또 있다. 박정희다. 근대화가 어쩌구 저쩌구 떠들어도, 그 자가 이 땅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파괴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박정희는 일제시대에는 황국신민 군대의 다카기마사오로,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원으로, 그 뒤에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자로, 그 뒤에는 20년 군사독재와 시월유신 쿠데타를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한 자로 변신하면서, 이 땅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파괴해 왔다. 이런 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어떻게 이 땅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킨다는 말인가.

최근에는 조갑제가 있다. 이 자는 1994년 3월, 월간조선에 쓴 '대한민국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글에서 "김유신과 김일성은 1천 3백 년이란 간격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은 통일을 위한 전쟁을 결심했던 한국 역사상 유이(唯二)한 지도자이다."라고 했고, "전쟁을 결심해 본 지도자로서의 김일성, 자주국방을 신조로 삼아온 지배충, 그리고 무력통일을 기약한 국가총동원체제-여기서 우러나는 자존심, 생존의지, 일관성이 미국과 대등한 외교협상을 벌이도록 뒷받침하는 근원일 것이다."라며 김일성을 통일 지도자의 반열에 올리고, 북한 지도부를 극도로 찬양했다. 하지만 글의 제목에서 연상되는 것처럼 이글의 기조가 당시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무력 공격하자는 내용이어서 그런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다고 조갑제는 소환되지도 처벌받지도 않았다. 결국 심한 북한 찬양을 담은 글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반북 언행을 일삼은 사람이나 반북한의 기조가 명확한 글들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과 검찰의 기본임을 우리는 쉽게! 경험한다.

강정구 교수의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를 글 이후, 수구단체들의 고발, 경찰의 국보법 7조에 따른 사법처리 방침, 이후 소환과 조사 과정을 쭉 지켜 보면서 떠 오른 것 또한 바로 국가보안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생각이었다. 입만 뻥긋하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거품 물고 떠들면서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말살한 자들을 숭상하는 이 땅의 수구세력에게 같은 표현으로 묻고 싶다.

"자유민주주의를 알기나 하나요?"

사실 나도 알고 있다.

사실 그 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다만 그들은 그동안 반김일성, 반김정일, 반북한 주장만 하면 정권의 보호 아래 법 위에 군 림해 올 수 있었던 비정상적 지위를 계속 누리고 싶어한다는 것을! 그래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 자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이 땅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임을

|박스|

윤민지(동국대 사학과 4년)

- 강정구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선배님들이 "우리 학교에 강정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민족의 통일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이다.", "교수님께 단순히 학문뿐만이 아니라 학문에 임하는 자세와 삶을 배운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기대했던?)푸근한 인상이 아니라 딱 부러지게 올곧아 보이는 인상에 내심 당황했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4년동안 강정구 교수님 강의를 듣다보니 선배들이 말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앎과 실천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이 어려운 앎과 실천의 일치를 보여주시는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의 삶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아요.

- 최근 강정구 교수님이 기고하신 칼럼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을 보고 드는 생각은? 칼럼에 담겨있는 학문적 내용은 온데 간데 없고, 색깔몰이 마녀사냥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글을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잘라내는 말꼬리 잡기가 사법처리까지 이어지 는 상황에 어이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경직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요. 학자의 연구, 학문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분단이데올로기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가 우선되는 반쪽짜리 사회를 보게 됩니다. '강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취업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그 사람의(상공회의소 김상렬 부회장이) 무식함이 통용되는 사회를 봅니다. '빨갱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는 무시무시한 사회 말입니다.

- 강정구 교수님 칼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학문의 다양성과 학습권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시퍼런 칼로 난도질당하는 일은 막아야 해요. 부당하다 소리치고 싶어도 취업을 볼모로 잡혀 스스로 입막음 해버리는 가슴 쓰라린 대학이 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꼭 막아야 합니다.

강정구 교수님의 사건을 올바로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사회를 이성적으로 만드는 것,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강정구 교수님 사건 해결을 위해 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는 '문어의 머리'1)를 자르는 투쟁을 하고 있다 - DMZ 하와이

국제연대국 유 홍

지난 9월 9일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녹색연합 등의 주최로 하와이, 필리핀, 오키나와 등지의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중 하와이의 사례는 '평화누리통일누리' 독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인터뷰를 하게되었다. 와이키키 해변 등 관광지로만 익숙한 하와이, 이미 161개의 군사기지를 하와이에 갖고 있는 미군은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스트라이커 부대의 주둔과 훈련을 위해 3천 만평에 달하는 훈련장을 조성하고 있다. 그 땅을 지키고 또한 하와이의 독립을 위해 활동 중인 디엠지 하와이 알로하 아이나(DMZ Hawaii/Aloha Aina)의 테리 케쿨라니씨(이하 테리)와 카일 카지히로씨(이하 카일)가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셨다.

어제 매향리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감을 말해달라.

테리: 거의 울 뻔했다. 우선, 매우 기뻤던 것은 폭격훈련이 중지되고 주민들과 땅이 평화를 되찾았다는 것이다. 폭격훈련을 중단시킨 것은 주민들의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우 슬펐던 것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이 폭격연습을 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카일과 내가 비에케스에 가서 불발탄들을 보았을 때도 똑 같은 심정을 느꼈다. 1974년 아니면 75년에 우리는 카호올라웨섬(하와이 섬 중의 하나)에 갔다. 우리는 그 섬에 상륙해서 해군이 폭격연습을 할 때 섬에 머물렀다. 그들이 폭격을 중지하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중지하지 않았다. 그 때 우리는 수 십 년의 폭격으로 땅이 파괴되고 주위 환경이 죽어가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나는 지금도 그 섬의 고통을 느낀다.

테리의 고조 할아버지는 하와이 독립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평화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나. 고조 할아버지의 영향인가?

테리: 나의 고조할아버지는 1897년에 쿠에(KUE) 청원에 서명하였다. 평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베트남전 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이다. 대학에 가서는 소수 민족 운동을 하였는데, 그것은 유색인종들의 자주권에 대한 운동이다. 아시아계 미국인, 멕시코계 미국인, 흑인들이 자신들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정부에 저항하여 궐기하는 것이다. 그 이후하와이 원주민 운동에 참여하였고 카호올라웨섬에 가서 투쟁하였으며 구속되었었다. 최근에는 하와이 국가를 되찾는 것과 비무장화에 집중하고 있다. 비무장화운동은 처음에는 어려웠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애국적이고 공산주의자로 보면서(웃음) 무시했다. 내 목표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고, 하와이 국가와 정부를 되찾는 것이다.

카일: 나는 일본계 하와이인이다. 하와이 원주민은 아니지만 우리 집안은 1890년대부터 하와이에서 살았고 나는 4세대이다. 나는 우리 역사에 대해 배우지 못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식민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오레곤에 있는 대학을 갔을 때 나는 남미, 아시아에서의 혁명적 투쟁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러한 운동에 대한 미국의 은밀한 전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

다. 나는 하와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자신의 역사에 대해 배울 필요를 깨닫게 되었으며 내가 하와이 사람들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우리는 오레곤에서 하와이와 연대하여 하와이를 위하여 활동하는 그룹을 시작했다. 미국 각지에 있는 우리 그룹들은 유사한 일을 했으며 나는 1996년에 하와이에돌아와서 퀘이커 조직인 미국친우봉사회와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다.

비무장화운동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와이에서의 많은 근본적인 모순들 즉, 하와이 국가의 파괴,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전쟁, 환경파괴, 청년들의 군사화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계기는 비에케스 운동이 활발해진 1999년이었다. 테리와 나는 비에케스운동이 최고조였던 때에 거기에 갔다. 비에케스 방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조직할 것인지와 국제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게 되었다. 문제 자체가 국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동 역시국제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와이에서 우리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 언론과 미국식 문화의 강력한 지배 때문에 여전히 매우 어렵다. 미국은 전쟁 중이므로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미국인들은 세뇌당한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비애국적이고 군인들에 맞선다고 비난받는다.

테리의 고조 할아버지가 서명했다는 쿠에(KUE) 청원운동에 대해 덧붙이자면, 1998년이 되어서야 하와이 학자들이 의회에서 서명의 원본을 발견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하와이의 미국으로의 병합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 운동은 정부에 의해 우리역사에서 지워졌었다. 아무도 그것이 병합조약을 중단시키는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미국 군대는 기지가 필요하고 하와이 전체를 갖겠다면서 그것을 힘으로 뒤집었다.

테리: 1998년에 그 청원운동이 발견되고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 우리들은 100년 만에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오라우이 궁에서 우리는 쿠에 청원에 서명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전시했다. 당시 하와이 사람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보면서 울었다. 자기 조상들이 미국에 병합되는 것을 반대하였던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병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침묵을 지켜왔던 것이다.

식민화 과정의 하나로서 우리말은 1900년대 초부터 금지당했다. 미국인들은 우리 정체성을 잃게 하기 위해 우리말 등을 빼앗아 갔다. 그 목적은 우리들을 서구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당신들의 조직 디엠지 하와이 알로하 아이나 (DMZ Hawaii/Aloha Aina)의 설립 배경을 말해달라.

카일: 2000년에 기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던 여러 그룹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전략과 연대에 대해 토의하는 모임을 가졌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한 2년 후에 스트라이커 부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항할 조직을 네트워크 형태로 만들었다. 명칭은 군사용어인 디엠지(비무장지대)에서 왔다. 하지만 우리는 하와이를 진정한 비무장지대로 만들기를 원한다. 알로하 아이나는 "땅을 사랑하기"의 하와이 개념이다. 명칭에 알로하 아이나를 넣은 것은 하와이 사람들이 우리 운동의 중심에 자리하게 하기 위해 중요하다.

테리 :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운동은 백인들과 함께 하는 환경운동과 다르다. 이것은 카

나카마오리(하와이 워주민)들이 중심에 있는 운동이고 투쟁이다.

카일 :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백인 동료들이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와는 다르다. 미국에는 인종 차별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큰 규모의 환경단체들이 있다. 그들은 원주민이나 유색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테리: "말라마 아이나"는 땅을 보살핀다는 뜻이고 "알로하 아이나"는 땅을 사랑하자는 뜻인데,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정치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한다. 당신이 우리 땅에 살고 싶다면 땅을 보살피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한 개념이다.

평택 농부들은 그들의 땅을 생명이고 자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당신들은 땅을 조상이라고 부른다고 들었다. 당신들과 평택 농부들은 공통점이 있다.

카일: 맞다. 땅은 이용 대상이 아니고 관계이다.

하와이에 있는 군사기지와 군대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말해달라.

테리: 군대는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에게는 단지 기지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 군대는 정치 권력이다. 우리는 하와이의 독립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군대의 점령이 우리 정부나 우리 정부를 되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탄압하고 있다. 그것이 첫번째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기지가 생기면 우리는 그 지역에 접근을 할 수 없게된다. 세 번째는 비밀의 문제이다. 우리는 군일들이 하는 일을 알 수 없다. 물어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 땅에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카일: 테리가 말한 것에 몇 가지 덧붙이겠다. 점령의 결과로, 군대가 통제하고 권력을 가짐으로 인해 환경파괴는 끔찍하다. 군대는 하와이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우리가 알기에도 대략 800개가 넘는 오염지역이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곳들이 있다. 화학물질들이 우리의 물과 토양으로 스며들고 바다로 흘러간다. 아시다시피 다이옥신이나 중금속들은 사람의 신체에 들어오면 수 세대에 걸쳐 피해를 입힌다. 매우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도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발탄들은 몇 천 에이커의 땅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하와이는 본토에 비해 매우 작은 곳이다. 따라서 그렇게 많은 땅을빼앗아 가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줄어들고 주거비용이 비싸진다.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든다. 문화적 장소들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조상들이 묻힌 곳 같은 신성한 장소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계곡이나 바위 등이 있는 곳들자체도 사원처럼 신성한 곳이다. 이런 곳들이 파괴되고 있다.

테리: 카와이 섬의 서쪽에는 매우 큰 MD 기지가 있다. 그것은 "별들의 전쟁" MD 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그 기지의 일부분은 크고 오래된 모래 언덕 노힐리에 있는데 그곳은 우리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이다. 조상들의 유해 위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카일 : 그곳은 한국과 관계가 있다. MD 실험들은 항상 북한을 겨냥한다. 국방당국자들은

MD 계획을 확대할 때마다 언론을 통해 홍보한다. "북한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레이다와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테리: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를 되찾는 중에 있다. 미국은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전복하는데 연관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사과 결의안"에 서명했다. 우리에게는 이역사적 시기에 대한 증언을 하는 학자들과 문서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를 되찾는 중에 있다. 우리나라를 되찾는 것은 미군에게는 위협이 된다. 하와이 미군은 태평양 중앙에위치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미국이 현재 아시아 태평양으로 전략의 중심을 옮기고 있기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미국은 하와이 원주민들이 궐기하여서 자신의 정부를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스트라이커 부대를 보자.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시가지 공격 차량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우리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 아마 그것들은 단지 이라크의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하와이에서 진실을 더 밝혀내게 되면 우리는 더욱 폭도로 취급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투쟁에대해서 조금이라도 말할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다.

스트라이커 부대에 대한 대응을 2002년부터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해달라. 카일: 첫 번째 과제는 교육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소모임들을 만나고 공청회에 참석하여 항의를 하자고 말했다. 공청회의 첫 날 밤이었다. 공청회는 공개적인 모임이다. 미국 제도에서 공청회에는 아무나참가할 수 있다. 우리는 피켓을 갖고 있었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우리를 체포했다. 그들은 "피켓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 피켓을 갖고 들어갈것이다. 피켓구호는 우리 입장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테리 : 육군은 공청회를 사유지에 있는 개인 건물, 매우 폐쇄적인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했다. 우리가 개인건물에서 열린 공청회에 갔을 때 경비들은 "당신들은 사유지에 있다. 피켓을 갖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고 우리는 "하지만 이것은 공청회이다."라고 말했다.

단지 피켓때문에?

테리: 그렇다. "사유지이다. 피켓은 안된다."고 그들은 말했고 "공청회이므로 갖고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대응하자 경비들은 피켓을 빼앗으려 하고...(웃음) 카일은 첫날 연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내가 연행되었다. 그래서 그 사건은 하와이에서 매우 큰 이슈가 되었다.

카일: 그리고 세 그룹이 육군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환경문제에 대해 더 많은 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기각했고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단지 전술적이다. 법적 대응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면 우리는 항상 패배할 것이다. 법은 억압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기각 사유는 무엇이었나?

카일 : '육군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를 아는 전문가들이다.

또한 그들은 전쟁 중이다. 그들은 훈련을 해야 한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가졌다. 군은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군은 그들의 결정을 밀고 나갈 수 있다.' 등이다.

하지만, 스트라이커부대가 3천만평을 차지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키지 않는가?

카일: 그렇다. 군은 보고서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파괴할 것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필요로 하므로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 지역사회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결코 답하지 않는다. 권력은 항상 불공평하고, 정부와 군대 그리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파괴적인 것들 편이다. 그래서 평택이나 비에케스처럼 직접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파괴를 직접 막을 수 있는 우리 힘의 원천이다. 직접적인 행동이 성공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여 하와이 투쟁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다.

하와이에서 반기지 운동을 하는데서 주된 어려움은 무엇인가?

카일: 하와이 주민 중 17%가 군인, 군인가족, 퇴역군인들이다. 따라서 주민 상당수가 친군 대적이고 친미적이며 매우 보수적이다. 그들은 자주 우리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고 비난한다. 우리는 또 우리가 말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군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군은 일부 주민들의 군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비에케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군은 어부들에게 돈을 주면서 투쟁에 동참하지 말라고 했다.

테리: 예를 들어 하와이 상원의원 이누이는 하와이 주민들과 군대사이에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주민들에게 직업을 제공하는 등 주민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는 하와이 원주민이살 보호구역 같은 것을 설치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육군 교범을 전산화하는 직업을 갖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직업을 갖는 것에 기뻐해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되찾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살필 수 있다.

카일: 경제적 의존은 매춘과 같다.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강제가 작용한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경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다른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군대에 의존하는 경제에 대한 대안을 우리는 원한다.

여러분의 심포지엄 발제문 결론 부분에 의하면 태평양에 있는 평화단체들이 자신들의 정부에게 림팩 훈련에 참가하지 말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림팩훈련에 저항하는 활동에 대해 소개해 달라. 또, 림팩훈련을 반대하는 공동성명 등의 공동행동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테리 : 이전에 코홀라웨에서 했었다. "핵무기 없고 독립적인 태평양 운동"이 캐나다와 일본

에 가서 코홀라웨에서의 림팩훈련에 참가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그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카일: 우리가 함께 행동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 군대가 하와이에 오면 그들 역시 폭격연습을 하는데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평통사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테리: 한국에 와서 무척 기쁘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배웠다. 여기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우리는 많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서로 나눌 것이 많다. 서로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만약 우리나라에 올 기회가 있으면 우리에게 연락하라. 올바른 우리역사를 알게 하고 싶다. 와이키키에만 머물지 말라.(웃음) 하와이에 오는 사람들은 보통 상업화된 문화만 접하게 된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 문화를 가져가고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모욕적이다.

카일: 관광산업은 우리 투쟁과 우리 민족에 대한 지배자들의 폭력의 일부분이다. 나 역시 테리처럼 한국 상황에 대해 많이 배웠다. 나는 우리의 지원과 연대를 당신들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운동에까지 확대하고 싶다. 한국에서의 평화는 하와이와 다른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와이의 군대를 축소시킨다면 한국과 오키나와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 더 많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와이는 문어의 머리이고 문어발들이 한국, 필리핀 오키나와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문어발을 잘라내고 나서는 문어 머리를 제거해야 한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1) 미국의 가장 오래된 통합사령부인 태평양지구사령부(PACOM)을 일컫는 말, 하와이에 주 둔하고 있는 미군은 히(he'e-문어) 괴물이다. 머리는 PACOM, 눈은 산위에 있는 망원경들과 레이더 시설들, 뇌와 신경계는 슈퍼컴퓨터들과 섬을 종횡하는 광케이블로 상징되고 있다. 문어 괴물의 촉수들은 북미의 서쪽해안부터 아프리카의 동쪽해안, 알라스카에서 남극까지, 그리고 한국의 평택에 뻗혀있다. | 편집자 주

물... 햇빛... 그리고 평화의 인사 수도꼭지 하나를 네 가구가 사용하는 곳에 살았었다. 누군가 쌀을 씻고 있으면 저녁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근처에 서성거려야 했다. 그즈음 간절히 바랐던 나의 평화는 내 부엌에, 나만의 부엌 창가에 커피와 크림을 나란히 올려놓고 뽀를 뽀글 주전자 물을 끓이는 것이었다.

반지하 방에서 둘째 아이를 낳았다. 햇볕이 몹시 그리웠다. 기저귀를 널 공간이 부족하였다. 그즈음 간절히 바랐던 나의 평화는 햇볕좋은 마당에서 기저귀를 뽀송뽀송 말리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 빨래를 널며 간절히 바라는 나의 평화는 저 햇빛으로 이라크에서도 뽀송뽀송 빨래가 마르는 것이다. 그들의 수도꼭지에서도 아침밥을 지을 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라크 남정네들의 하얀 옷이 피에 젖지 않고 뽀송뽀송한 빨래줄에 휘날리기를. 이라크 여인들의 검정 옷이 눈물과 원한에 젖지 않고 뽀송뽀송 빨랫줄에 휘날리기를. 오늘 간절히 바라는 나의 평화는 평택의 들판에도 그 햇볕 그대로 비추는 것이다. 내년에도 그 햇볕으로 쌀농사 짓는 것이다. 오늘 나의 평화는 팽성의 들판에 벼가 익어가는 것이다. 그곳에 둘러앉아 새참을 배불리 먹고, 누군가 끓여온 주전자 물에 커피를 타먹는 일이다. 벼 베어 땅에 뉘어 놓을 때 그곳에 내리는 안락한 휴식이다. 황홀하게 스며오는 벼 베어놓은 냄새. 들깻잎 향기... 오 나의 아로마 떼라피... 오 나의 평화.

간절히 기도한다.

집집마다 하얀 빨래 펄럭이게 하시고 뽀송 뽀송 마르게 하소서.

미군기지 수영장으로 물 흐르게 하지 마시고 논두렁 밭두렁으로 물 흘러가게 하소서. 미군기지 골프장으로 햇볕주지 마시고 그곳에서 벼가 익게 하소서. 황홀한 일몰을 가을걷이 끝난 그 들판에서 보게 하소서.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팽성의 농민들 평안하시기를. 앗 살람 알라이쿰.

나에게 '평화'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위 세 단어이다. 물, 그 일상의 중요함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으랴. 햇빛, 언제부터인가 빨래를 널면서 햇빛에 감사하고 지구가 자전하며 그 똑같은 햇빛을 골고루 받게 될 지구촌 친구들에게 평화를 비는 마음이 생겼다. 안녕, 오늘도모두 잘 지내. 안녕, 이라크 친구들아 제발 살아 있어. 내가 바라보는 저 햇빛을 몇 시간 후다른 나라의 친구들이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던가.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인사하자. "그대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의 일상이 평화롭기를 간절히 빕니다."

미국을 강타한 두개의 허리케인 - 카트리나와 워싱턴 반전집회 -

미술인 최 성 희

지난 9월 4일. 며칠 동안 이곳 뉴욕의 신문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루이지애나 주와 미시시피 주 등을 포함해 걸프 해안에 불러온 대참사와 미 정부의 대책 없는 비도덕성에 분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미국의 주요 운동 단체들은 미 정부가 이라크를 황폐화하는 데 하루에 2억 달러를 쓰면서 동시에 국내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상대로 자본주의와 인종주의로 점철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굳이 뉴욕타임즈가 9월 3일자 1면에 "사회의 변두리에서 비극의 초점으로"라고 굵은 활자제목과 함께 텍사스 휴스턴으로 짐짝처럼 실려피난 갈 수 밖에 없는 흑인 수재민들의 깊은 절망과 울분이 담긴 사진을 싣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번 사건 역시 미 정부, 군사 기관의 범죄적 태만으로 빚어진 작년 12월의 '쓰나미'처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던 것을... 흑인들은 물론이고 한인들을 비롯한 여기의 많은 소수계 인종들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1963년 8월 28일,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인권집회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는 그 유명한 "나는 꿈이 있어요."라는 연설을 했다. 킹 목사는 이번 카트리나로 아무 지원대책도 없이 꼼짝없이 물 난리를 당하고, 닭장의 닭처럼 옮겨져 여기 저기 체육관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몇 개월을 살아야 하는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의 흑인 후손들을 보며, 또한 그가 반대했던 미 정부의 베트남 침략 때처럼 수렁에 빠진 오늘의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략을 보며 하늘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는 말했다. "범죄자는 다름아닌 우리의 정부이다. 우리의 정부를 언급하지 않고서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 없다"라고.

대재난 허리케인 카트리나 수습에서 확연히 드러난 부시정권의 파시즘적 실체. 구호는 뒷전이고 '안보'라는 목적으로 재난지역인 오를레앙에 군사계엄령까지도 고려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흑인들에게 서슴없이 총을 겨누는 정권 말이다. 부통령 딕 체니를 비롯한 석유, 군사 재벌에게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막대한 이윤을 올린 이라크전과 더불어 또 다른 이윤상승의 가장 좋은 기회였다. 석유값 투기로 서민들의 집세와 자동차 기름값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믿겠는가? 5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내 렌트비는 한 달 만에 10%가 올랐다.

9월 24일, 워싱턴에서는 이라크전 이후 사상 최대규모의 반전집회가 열렸다. 내가 사는 뉴욕에서 버스로 4~5 시간 거리. 워싱턴 버스 정류장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가지가지 피켓과 플래카드, 유인물, 촌철살인의 반전구호를 쓴 셔츠와 모자, 뺏지, 그리고 넘쳐나는 인간미로 무장한 사람들...

30만명 가량의 참가자들 중에서 다수가 생애 처음으로 집회에 참가했다.

그 뿐인가? 아들 케이시를 이라크전에서 잃은 48살 어머니 신디 시핸이 한달 넘게 부시의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 앞에서 한 시위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 전쟁이 처음부터 잘못 되어 도 아주 잘못 되었다는 것을 크게 일깨워 주는 또 다른 허리케인이었다. 이번 집회에서 이 라크 전에서 죽은 아들, 딸들의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의 사진과 자기 자식을 돌려 달라는 절절한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더욱 눈 여겨 보고 들어야 할 목소리들이 있다. 바로 미국의 패권정책에 의해 신음 하는 아이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멕시코, 베네주엘라, 필리핀, 한국 등에서 터져 나오는 저항과 연대의 강한 목소리 말이다.

버스가 예상 보다 늦게 워싱턴에 도착하기도 했고 워낙 많은 사람이 모여 미주 한인 단체들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한참을 기다리니 낯익은 풍물 소리가 들려온다. 보무도 당당하게 힘찬 풍물 가락에 맞춰 오는 많은 한인 젊은이들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자주민주연합의 서혁교씨를 통해 오늘의 이 시위가 이라크에 군대를 가장 많이 파견하고 있는 미, 영, 그리고 남한에서 동시에 열리는 것임을 알았다.

아! 우리는 그리고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들이 미국의 비합 법적, 살인적 네이팜탄과 열화우라늄탄에 죽어가는 것을 기사로 보면서도 일상의 스케줄을 아무일도 없다는 듯 영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전쟁은 정치적 관심이 많건 적 건 간에 사람들의 일상에 점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음을 실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부시는 또 이란을, 시리아를, 베네주엘라를, 북한을 침략하려 한 다.

타인의 거울에 보여진 자기 자신은 자신의 거울로 볼 때보다 때로 좀 더 큰 당혹을, 애착을, 분노를 동반한다. 내가 여기서 나의 거울로 미국의 흑인을 보는 것처럼 미국 역시 그의 거울로 한국과 북한을 본다. 나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때론 의식적으로 미국이 보는 북한의 핵과 인권에 대한 기사를, 영화를, 책을 보게 된다. 대부분 부정적이거나(극우파들),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거나(좌파 또는 진보파들)이다. 불행히도 나는 북한에 대해서, 특히 인권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라도 하려는 미디어를 아주 드물게만 접할 수 있었다. 불행히도 나는 미국의 지리정치 게임에서 미국의 타국을 상대로 한 인권 시비는 우위를 선점하고 침략의 구실을 만들려는 상습 행위였다는 것을 자주 잊는 미국인들을 발견했다. 자국의 인권은 더 엉망임에도 말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한 행사에서 만난 루마니아 출신의 한 여성은 "대부분의 북한 관련 다큐멘타리나 전시회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한 현 부시정권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녀는 또한 구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미 정부와 미 공작기관의 은밀하면서도 비슷한 이데올로기 공작으로 무너졌는지 얘기했다. 인권은 기본인 만큼 그것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기도, 악용되기도 쉬운 것 같다.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도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가? 가슴이 먹먹하다.

글을 마치며, 나는 올 7월 팽성 대추리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고자 한다. 고맙게도 평통사 회원분의 도움으로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 바람, 최병수님을 비롯한 예술가와 학생들, 그리고 대추리 주민들의 열정과 헌신에 찬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싸움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 날의 그 뜨거운 감동과 고마움을 어찌 몇 마디로 표현 할까? 그것은 벅찬 희망이었다.

9.24 워싱턴에서 열린 반전집회에 참석한 한인들

지난 7월 뉴욕 퀸즈 플러싱의 한 한인교회에서 '북한대학살 전시회'가 열렸다. 미국의 많은 한인 기독교지도자들은 북에 대해 미국정부의 앵무새 역할을 하곤 한다.

(최성희님은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미술인이다. 학생 때 유학을 왔다가 브룩클린에 눌러 지 낸 지 9년 째다. 지난 5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NPT 회의에 참가한 평통사 대표단과의 인연으로 「평화누리통일누리」에 소식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2005. 6 어느날, 꿈과 현실..... 검찰청 가는 길 -

동두천시민연대 상임대표 강 홍 구

2005년 6월 어느 날 사무실의 전화벨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시민이라는 어떤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 동두천정형외과 앞 사거리에서 미군 트럭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빨리 가보시지요...'

부랴부랴 달려나간 사고현장! 웅성거리는 많은 사람들. 사고현장에는 아직도 사고당시의 참혹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목격자들은 그 참혹함의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아주머니가 미군 대형트럭에 의해 깔려 즉사한 사건이다. 정지해있는 미군트럭 앞을 우유 손수레를 밀고 건너던 아주머니가 순식간에 미군트럭에 의해 치어 쓰러졌고, 앞바퀴와 뒤바퀴가 배와 가슴을 타 넘으면서 현장에서 즉사했다. 사망자의 상반신은 모든 뼈가 으스러지고 척추가 3동강이 났다. 한국경찰들과 미군헌병들은 사고현장을 수습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사건이라서 그런지 유독 한국경찰들이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한국경찰이 미군트럭의 운전자와 선탑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었고, 사고조사의 과정도 한국경찰이 총괄 지휘하고 있는 듯 했다. 미군 헌병이 임의대로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려 하자한국 경찰이 능숙한 영어로 사고현장 조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으니 차량을 그대로 두라고 소리쳤다. 머쓱해진 미군헌병은 이내 뒤로 물러섰다. 한국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현장의 모든 부분을 정확히 기록 및 촬영하기를 한 시간 이상 하고서야 사고현장을 정리하였다. 한국경찰은 우리 시민단체에게도 사고에 대한 정황과 초동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경찰의 미군범죄에 대한 대응방식이 현격히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경찰은 사고차량 운전자와 선탑자를 경찰서로 이송시키고 미군 헌병 측에게 미군 측 공식대표를 1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출두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사고차량도 증거 보존을 위해 일단 한국경찰에서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미군 헌병 측과의 마찰이 있는 듯 했으나, 이내 한국경찰에게 사고 미군 차량을 인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우리도 사건관련 정황과 사고현장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로 발길을 옮겼다. 얼마 후 미군 측 공식 대표자가 도착을 하고, 본격적으로 미군 운전자와 선탑자에 대한 초동신문조사가 시작되었다. 미군범죄 전담 한국경찰은 능숙한 영어로 미군운전자를 조사하였다. 사고차량 운전자 미군은 초지일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주장하면서 사고 피해자 아주머니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했다며 자신의 과실을 발뺌하는 듯 했다. 그러나 사고현장에서 철저하고 풍부하게 초동수사를 마치고 온 한국경찰관은 미군 운전자의 막무가내 논리를 집요하게 추 궁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 경찰관과 미군 운전자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길 두 시간여, 이윽고 선탑자인 여성미군이 울먹이면서 사고정황에 대해 털어 놓기 시작했다. 선탑자 자신은 사망한 아주머니가 미군차량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사전에 발견했고, 운전자에게 두 번씩이

나 큰소리로 아주머니에 대한 주의를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미군이 주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례와 아주머니를 치는 순간 '탁'하는 큰소리가 나고 충격이 왔는데도 어쩐 이유에서인지 운전자 미군은 트럭을 멈추지 않았다며 선탑자 미군은 울먹거렸다. 그러나 운전자 미군은 계속해서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였다. 결국 한국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운전자 미군도 부분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군 운전자의 운전미숙,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그리고 미군측이 일관되게 발뺌은 하고 있지만 한국경찰은 운전자 미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의여지도 간과하지 않았다. 한국경찰은 신속하게 미군 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진행하였다. 우선적으로 운전자 미군을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행위자 중심의 처벌인 관계로 선탑자에 대해서도 지휘체계상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였다.

사고발생 한참 후 예상대로 미군측은 공무 중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포기요청에 의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했으며, 미군 운전자는 구속수감되고 재판 계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선탑자 미군을 포함 지휘체계상의책임자들도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번 사건 사망자 유족들에게는 사고 이후 미군측과 계약된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장례비를 포함하여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 받았으며,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 배상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사뭇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늘이 바로 미군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관련 운전자 미군에 대한 1심 재판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건의 진실이 가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법원으로 가는 길의 열차에 몸을 실었다.......

갑자기 휴대폰 진동소리가 바지춤에서 요란스럽게 울려댔다. 나는 순간 기겁을 하며 눈을 떴다. 꿈이었다. 모든 것이... 다 꿈이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과는 정반대였다...

지하철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온다.
'교대역', 나는 지금 서울검찰청에 가는 중이다.
오늘이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고 우리는 법사위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감 시 故 김명자씨 압사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한국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요청 재촉구를 제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검찰청 앞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다.

'그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면...

언제나 이 땅에서 현실로 다가 올 것인가? 아직 우리 투쟁이 부족하다! 투쟁으로 끝내는 꿈을 현실로 만들것이다. 그것이 불변의 법칙이다...' (강 홍 구)

SOFA 협정 제 22조 형사재판권 3항을 보면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 다음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미군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 1차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①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②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1차적 재판권이란 배타적 재판권과는 달리 1차적 재판권을 갖는 나라가 재판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 상대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미군당국이 2002년 두 여중생 사건과 이번 고 김명자씨 사건에서도 보여졌듯이 단한번도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미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이 있으면 90% 넘게 재판권을 포기해 왔다. 이는 현행 SOFA 합의의사록에 주한미군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우리나라는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주한 미군인의 경우 재판 결과가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며(전체 80~90%), 실형을 받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명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범죄의 경우 주한미군당국은 대부분 주의, 견책 등의 행정적 징계로 끝내고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SOFA상 공무 중 미군범죄 '형사재판권'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중 범죄라 하더라도 한국민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대한 범죄는 한국정부가 수사권과 재판권을 행사토록 해야 하며 공무의 판단 여부도 한국정부가 가지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SOFA 개정이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가 주권국가로서 제한적 이나마 SOFA상 자국민보호 우선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그 권리를 강제하려는 의지가 일차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한국정부의 대미 예속정책이나 종속관계로는 설사 동등한 SOFA로 개정된들 무의미한 죽어있는 법조문에 불과할 뿐이다.

= 글 속에 제시된 자료는 인터넷과 언론에 올라온 글을 정리한 것임. | 편집자 주

(지난 10.27일 성조지는 "약 2주 전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마루리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당국은 상급자들이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치 못했다고 보고 중대장, 운전책임자, 차량책임자에게 서면견책을 내렸다. 그리고 가해 운전병인 제프리 브라이언트(19) 일병에게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고 추가훈련(Additional Training) 명령을 내렸다. | 편집자 주)

어여쁜 신부와 뿌듯한 여름휴가를..

송원준 (대전충남 평통사)

가만히 자리에 앉아 그날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벧엘의 집을 그만두고 우리 집사람은 여름 휴가 기간이라 이번에는 통일 축전을 참가할 수 있겠다는 기대로 날짜가 다가 오기를 기다리던 설레임........ 작년만 해도 우리는 벧엘의 집에서 노숙인 아저씨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메스컴으로만 통일 축전 관련 소식을 접하고는 했거든요. 절친한 친구 성은이에게 연락을 하고 올 해 만큼은 함께 통일의 열기를 느껴보기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하자면, 2개월 전에 결혼식을 마치고 저는 제 집사람을 데리고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남들은 신혼여행으로 괌이나 발리다 해외로 가는데 저는 무작정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신부와 설악산 등반길에 올랐죠. 올라가는 내내 내려가는 내내 신부는 울고 또울고 토하고 또 토하고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설악산을 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시는 우리 신부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름휴가라고 어디 바닷가나 계곡이 아니라 통일축전에 데리고 갔으니... 그나마 우리 신부가 대학다닐 때 여학생회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기에 다행이지 만약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신부였다면 아마도 서울을 올라가기는 커녕 작년처럼 통일축전관련 소식을 신문에서 접할 뻔했습니다.

남북 축구 시합을 보고 경희대에 간 시간부터 신부는 앉아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보는 것 응원을 하는 것 너무 힘이 들었나 봅니다. 한상렬 목사님이 연설을 하실 때도 희망새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도 힘이 없고 눈에는 졸음이 가득하고 "여보 언제 갈꺼야 나 졸려ㅜ.ㅡ"라며 흥을 깨는 것입니다. 4시간 정도 눈을 부치고 대학로로 가기 위해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잠이 많은 우리 집사람은 피곤한 기색이 역역합니다. 그 때부터 괜히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집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잘못일 지도 몰라.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휴가라고 쉬지도 못하고... 휴가는 휴가답게 보내야 하는데.....'

평통사 회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하던 용산에서 저는 힐끔 힐끔 제 뒤에 있던 집사람을 보았습니다. 집사람은 결의대회 내내 귀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대전역 벧엘의 집에서 아저씨들이나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때처럼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 무엇인지, 5027이 무엇인지, 주한미군 평택이전의 부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말을 열심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뒤질 세라 목소리 높여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사실 빨치산 부부처럼 가열차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부부의 모습을 꿈꿔왔습니다. 함께 서울을 오고 함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집사람과 나에게 '우리의 일'라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행복입니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이 아직 주둔하고 그것도 평택으로 이전을 한다는 판에 행복할 수만은 없죠.

여름 휴가를 통일축전 참가와 평통사 결의대회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라고 여깁니다. 무엇보다 서울을 다녀와서 제 집사람이 주한미군 문제와 통일문 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였고 또한 평통사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은 정말이지 잘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을 막는 일, 평화군축과 같은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을 위해서 평통사를 열심히 나가고 사무국장님도 많이 도와드리라고 합니다. 비단 우리 집사람뿐 아니라 제게도 이번 서울행은 정말 뜻 깊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처음 가보는 저는 옆에 있던 정한섭 선생님이 미군 기지의 넓이를 알려주는 손가락을 따라 눈을 돌리며 혀를 돌렸습니다. 넓다 넓다 그렇게 넓은 땅을 미군 놈들에게 내어주고 있었다는 생각이 분통이 터지고 그것도 모 자라 앞으로 더욱 대미의존성을 높이고 사대적 길을 가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 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소 이러한 생각으로 골몰하면서도 당장 내 현장과 삶에서 통일이나 평화실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 답답함을 느껴 왔는데, 서울에서 많은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갖고 돌아오니 입에서 주한미군 철거가가 끊이질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통사로 함께 활동을 하고 같은 생각으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 제게는 소속감과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주한미군 철거와 평택기지 이전 반대에 초석이 되는 운동과 그 운동을 하는 조직의 한일원이라는 생각이 더욱 평통사 모임에 열심을 내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많은 친구와 선후배들에게 알려서 함께 분회모임도 하고 함께 여러 행사도 함께 가자고 해야겠습니다.

우리 평통사가 하는 일이 초석이 되고 그것이 바늘로 댐에 구멍을 뚫는 것이라 해도 그 구멍으로 물이 새고 기어이 댐이 무너지듯이 그 길을 함께 열심히 갔으면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며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들렸는데 그곳을 돌아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 현장 |

8월, 매향리 폭격은 그쳤지만... -

서울평통사 최 문 희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가슴 벅차도록 감격스럽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마 내가 장가들 때 내 아내를 맞이할 때 과연 이것만큼 기뻤을까. 내 예쁜 딸아이 셋과 늦둥이 아들하나를 뒀는데 그 아이들을 얻을 때도 기쁨이 컸는데, 과연 그 기쁨이 지금보다 컸을까…" 폭격장 폐쇄에 대한 소감을 상기된 목소리로 밝히는 전만규 매향리폭격장 주민대책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흥분되어 보였다.

비행이 멈춘 2005년 8월 12일, 매향리는 대책위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사격훈련 중단을 자축하는 큰 잔치를 벌였다.

50여 년간 귀청을 찢을 듯한 소음, 훈련 중 실수라고 하면서 논 밭, 하물며 사람에게까지 안 가리고 떨어지는 포탄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여기 저기 박혀있는 상시대기 불발탄... 이런 지긋지긋한 것들로부터 이제 해방된 것이다.

여든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서너 살 꼬마들까지 300여명의 주민들과 이들의 승리를 축하해주러 온 여러 단체 사람들로 분위기는 그야말로 잔칫집이다. 거기에는 시골인심답게 두툼하게 썰린 돼지고기와 막걸리가 잔치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주변엔 각종 언론사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폭격장 폐쇄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인다.

한 인터넷 기자가 풍선을 들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에게 질문을 한다.

"폭격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신지요?"

"비행기가 안 떠서 좋아요." 일상의 질문을 받은 듯 쉽게 대답한다.

아이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다. 같은 대답이 바로 나온다.

"이제는 밖에서 놀 수 있어서 좋아요."

기자들의 질문에 쑥스러워하면서 순박하게 답하는 어머니와 아들. 답은 아주 짧지만 거기에는 매향리 주민들의 50년간 응어리진 고통의 한이 묻어있다. 폭격이 시작된 이래로 불발탄 폭발과 오폭으로 인한 사망자 12명, 중상자 15명. 그 밖에 폭발여파로 인한 주택파괴, 소음에 의한 난청현상. 54년간의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만은 않았다. 매향리 주민들은 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피와 혼을 매향리 마을에 묻었고, 기어이 폭격장 폐쇄라는 승리를 안아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고통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행히도 매향리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50여 년에 걸친 폭격과 불발탄으로 인해 농섬은 이미 거의 파괴되었고, 땅 속의 오염은 복구가 가능한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농섬의 오염치는 납 521배, 구리 13.3배, 카드늄 23.1배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다. 2002년 필리핀 미군기지정화위원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92년 필리핀 주둔 미군이 철수한 이후 독성 폐기물 오염으로 인해 백혈병, 암,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앓은 사람은 296명, 사망자는 224명이며, 전체 피해자는 총 1,934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왜 주둔 미군들은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버젓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주둔미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소파에 의해 미군은 환경파괴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물론 모든 나라가 다환경에 대해서 완전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는 1993년 독일 보충 협정을 개정하면서 미군기지 내에도 독일환경 법규를 적용토록 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소파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투쟁의 성과로 2001년 한미소파에 환경조항이 신설됐지만 그 한계는 명확하다.

가령 합의의사록의 환경조항을 보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환경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등 당위적 문구의 서술로 조항의 시행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주한미군의 원상복구 및 주한미군의 복구비용 부담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한미소파 환경조항은 현실과 떨어진 공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한미소파를 근거삼아 환경복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지금 매향리 환경문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없이 마무리 되어 진다면 이후 있을 용산기지 및 미2사단 등 계속적인 미군기지의 이전과 철수 이후 발생되어질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미군은 매향리의 선례를 들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으려 들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매향리 환경문제의 해결 없이 매향리 쿠니 사격장을

군산직도로 옮기는 것에 대해 미국과 잠정합의를 거쳤다고 한다. 국방부와 미국의 계획대로 라면 우리는 또다시 파괴된 제2의 매향리를 접하게 될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매향리 폭격으로 인한 환경훼손의 복구비용은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 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불평등한 한미소파는 반드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미국의 전쟁연습을 위한 폭격훈련에 의해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매향리 대체사격장 직도이전을 직도주민들과 힘을 합해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 가지 열쇠로 읽는 배우 권병길 -

평통사 홍보부장 김현진

배우 권 병 길 (59세)

<현재> 극단 '자유' 단원. 연극 '맨드라미꽃' 공연 중. 영화 '싸움의 기술', '각설탕'. '괴물' 촬영 중.

<출연작> 연극 '볼모지'(데뷔작), '무엇이 될꼬하니', '달맞이꽃', '따라지의 향연', '피의 결혼' 등 80여 편

모노드라마 '거꾸로 사는 세상'(해방공간부터 노태우정권시절 6월 항쟁까지를 배경으로 민중들의 삶을 '거꾸로 사는 세상'에 비유한 정치풍자극. 직접 희곡을 쓰고 출연)

영화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데뷔작),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공공의 적', '피아노 치는 대통령', '살인의 추억', '내 머릿속의 지우개', '그 때 그 사람들' 등 15편

〈수상경력〉 동아연극상, 평론가그룹상, 서울연극제상, 대한민국연극제상 외 다수 수상.

우리는 가끔 유쾌한 착각을 한다.

누구나 다 아는 대중 스타나 인기인이 우리가 하는 일을 지지할 때 마치 그를 아는 모든 대중들이 우리 편인 것 같은 착각 말이다. 만약 내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배우'안성기'가 나와서'확장은 침략이다'라며 뜨겁게 외치면 나는 안성기를 아는 모든 이들이 마치 확장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낀다. 아마 이것이'얼굴이 알려진 사람'의힘이며 사회적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만난'얼굴이 알려진 배우'권병길은 그 몫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며 지금보다'크게 얼굴이 알려진 배우'가 된다면 우리를 더 없이'유쾌한 착각'속으로 빠트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그를 통해 무척 자유롭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첫 번째 열쇠 : 그 때 그 사람들

'그 때 그 사람들'은 10.26을 소재로 한 (블랙)코메디다. 우리 현대사가 어쩜 그렇게 코메디에 잘 어울릴까. 그것이 참 비극이다.

조선일보 조갑제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10.26 사건의 7大 우연(또는 악연)'이 그대로 영화'그 때 그 사람들'의 7대 감상 포인트가 되는 것도 코메디스럽다. 예를 들면 이런식이다. 조 씨는 우선 사건 당일 '차지철 경호실장이 권총을 차고 있었다면 김재규(백윤식역)와 총격전을 벌였을 것이고 그 사이 박 대통령이 피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씨가 두번째로 거론한 우연은 '김계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권병길 역)이 만찬 직전 단둘이 있었을 때 김재규의 불온한 발언을 중시하여 경호원들에게 비상을 걸었다면 사건은 예방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은 영화에서 박정희가 궁정동에 도착하기 전에 김재규 중정부장과 김계원 비서실장이 앞뜰에서 차를 마시며 김재규 부장이 비서실장에게 차지철을 없애겠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묘사됐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전형적인 '딸랑이' 김계원 역을 능청스럽게 해낸 배우 권병길은 코메디

스러운 '그 때 그 시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힌트를 주자면 그는 전혀 코메디스럽지 않다. 그는 묵직하고 담담한 울림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열쇠 : 양심

그 때 그 시절, 모두가 숨 막혀했던 유신 시절, 그는 '양서협동조합운동'을 했다. '양서(좋은 책)는 양심을 낳고 양심은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운동이었다.

"나의 본업은 연극입니다. 단지 나의 순수한 양심에 비춰서 이 사회의 아픔을 알고 모순과 부조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 면 모순을 발견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원초적인 생각, 심성,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 즉 신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의 본질적 문제로 다가왔죠. 관심을 구체적으로 갖다 보니까 홍근수 목사님 같은 분도 만나게 되고, 향린교회에도 가게 되었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도 모르게 서서히 다가간 겁니다."

세 번째 열쇠 : 순수

80년대 후반 임수경씨가 문규현 신부와 함께 방북을 하자 그는 마치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고 한다. 예술가의 눈에 비친 임수경씨의 모습은 '불과 5cm도 안되는 분단의 벽을 나비처럼 훌쩍 뛰어넘은 순수한 학생'의 모습이었으며 그 자체가 큰 감동이었다고 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임수경후원사업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후원사업회장이 향린교회 홍근수 목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연은 시작된다.

90년대 초반, 향린교회 교인이 된 지 얼마 안 돼 홍근수 목사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 때 그는 교인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자연스럽게 시위에 동참한 것이다.

"당시 홍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 분의 생각과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족과 분단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은 바로 '순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바로 그 점이 예술인으로 서 제가 홍 목사님과 만나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열쇠 : 자유

그는 윤이상 선생을 생각하면서 예술가로서 통일문제와 민주화 문제를 바라봤다고 한다. "예술가는 통일지향적입니다. 만나야 되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야하는 것이 예술가의 본질입니다. 틀과 억압을 파괴하고 그 속에서 숨을 쉬어야 예술이 창조되는 거니까요." 그러나미국과 남한 사회 상당수는 '자유'를 쉽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파하는 데 어떻게 자유를 얘기하죠? 남들이 억압과 굶주림, 분단의 고통 속에 있는데 자유를 주장한다는 것은위선입니다.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홍 목사님은 10년 동안 설교 마지막을 항상 '자유인으로 사십시오'라는 인사로 마치셨지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와 닿았어요. 진정한 자유는 서로를 평화롭게 할 때 가능한 것이죠."

다섯 번째 열쇠 : 여유로운 배우

그는 스스로의 연기에 대해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게 많다고 평가했다. '벤허'를 만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영화 완성 후 자기 작품에 스스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라고 했는데 그는 배우로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고 싶은 갈증을 느낀다고 했다. 올해로 연기생활 37년째. 첫 출연작인 연극 '불모지'(차범석 작품)에서 그는 '최'노인 역을 맡아 나이에 걸맞지 않게 능청스런 연기를 펼쳐 주변의 찬사를 받았다.

"20대에 이미 할아버지 역을 소화해서 어쩌면 지금부터의 연기가 더 수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 그 나이에 노인 역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잘했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여유 있게 했고...허허".

요즘 새로 촬영중인 영화에서 '수의사'역을 맡아 촬영을 위해 제주도에서 열흘정도 머물다 막 올라왔다는 그는 정신없이 바쁜 모습이었지만 표정엔 여유가 가득했다.

촬영을 가거나 연극연습을 할 때는 늘 '소풍가는 마음'이라는 그의 삶은 언제나 즐겁다. 공연이 없을 때 그는 늘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연기의 간접 체험을 한다는 그에게 연기는 '천직'인 듯 보였고, 젊은 시절부터 노역이 잘 어울렸듯이 그에게는 오래 묵은 여유가 있다.

여섯 번째 열쇠 : 평화와 통일 을 여는 사람들

그는 향린교회를 통해 평통사의 전신인 '평통연'(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회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평통연'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평통사'로 바뀔 즈음 본업인 연극과 운동 사이에서 중대한 고민을 한다. '배우에게 기회는 딱 한 번'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한창 일 해야 하는 나이에 배우로서의 위치를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운동에 참여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 때부터 그는 연기에만 전념했고, 멀리서나마 평통사에 꾸준한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내 신념과 가치를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이탈하지 않고 예술가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계속 닦고 연마를 했습니다."

그는 활동하는데 있어서 앞장서지도 않았지만 후퇴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평통사 회원인 그는 평통사의 10년의 발전과정을 지켜보면서 감회가 남다르다.

"평통사가 처음에는 미약하게 출발했죠. 지금의 평통사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될 통일운동의 전위부대로 생각합니다. 나도 참여했다는 데 긍지를 느껴요. 평 통사가 요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평택문제도 황금옥토를 미군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내준 다는 게 아깝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게 자존심이 용납 안 하죠."

그는 사회운동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문익환 목사님의 경우도 50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통일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중적인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분야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그 사람들'에서 시작한 우리의 이야기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로 맺어졌다.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이 '그 때 그 사람'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는 또 한 번의 유쾌한 상상을 하며 문을 닫는다.

젊은 후배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갖고 자기 진로를 포기하고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 시대의 양심입니다. 자기 양심이 허락하는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과거에 독립 운동한 분들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자신을 연마하면 권력자와 맞설 수 있는 단단한 모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남북장벽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오솔길이 생겼죠. 분명히 통일로 가는 길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릴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희망과 용기, 그리고 신념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특별기획|

10월 7일 평화·통일연구소 창립 1주년 토론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군축 방안'을 지상중계한다. 이날 토론회는 리영희 명예이사장의 '9.19 베이징공동선언 이후 동북아 정세' 강연에 이어, 1부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 방안', 2부 '한반도 평화협정의 상과 평화체제 구축 경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발제문의 전문과 전체 내용은 평통사 홈페이지(www.peaceone.org)에서 볼 수 있다. | 편집자 주

9.19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 동북아 정세1)

평화통일연구소 명예이사장 리영희

토론회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발제하실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고, 나는 9.19 공 동성명과 6자 회담 전후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낙관은 금물 : 미국이 조약을 지킨 사례 없어

6자 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굉장히 문제해결에 접근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비해 나는 오히려 걱정과 불안이 생기면 우리들의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번 공동성명 합의문 자체로만 본다면 대체로 우리가 원했던 바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전반적인 사정에 비추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이 전혀 그러한 방향으로의 문제 해결에 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 집권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라크의 베트남화로 한반도에서 대북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졌고, 미국내 분위기도 마치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였던 1970년대 초의 그런 정치적인 역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쟁애호집단으로서는 북경회담에서 이루어진 그 방향으로, 동북아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6자회담 공동성명을 지킬 것인가? 에 대해서 나는, 미국이 조약을 단 한번도 지킨 사례가 없으므로,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단서를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북경회담 합의문을 보고도 걱정하는 까닭은 미국이 유엔결의 또는 국제적인 합의에 기초한 많은 협약과 조약들을 하나같이 거부하고, 백지화해버리고 자기들의 이익에 100% 부합하지 않은 한, 어떠한 국제적 의무도 거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포기에 상응하여 핵강대국의 핵 폐기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핵확산금 지조약(NPT)에 역행하는 국가도 바로 미국이고, 이라크의 경우만 해도 1974년에 유엔에서 결의한 침략에 관한 결의의 모든 항목에 다 위반됩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남의 나라에 대해 그 조항을 들어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자기들이 할 때는, 같은 행위라도 유엔결의를 이용해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핵문제에 관한 협정의 단계적 집행조치들을 백지화하여 '미·북핵협정'을 사문화시킨것도 미국입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자위수단으로 핵개발을 재개했고, 이때문에 6자회담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인 군축 문제, 평화협정, 미군주둔 문제만 하더라도 1953년 7월에 체결된 휴전협정 제60조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들이 미국에 의해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휴전협정에는 당시 남쪽과 북쪽에 있던 무기와 같은 종류의 무기로만 낡은 무기를 1대 1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재래식 무기가 아닌 무기, 즉 핵무기는 한반도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휴전협정 체결 후 2년 만에 이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1956년 남한에 수백개의 핵무기를 비밀리에 배치했습니다.

평화협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휴전협정의 의무조항인 평화협정 체결 문제, 통일한 국을 위한 선거문제를 1954년 4월의 제네바 회담에서 거부했던 이유는 한반도에 영구히 미군을 주둔시키고, 남한을 군사기지화 하여 중국과 소련 봉쇄를 위한 핵전쟁 기지로 만들기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케네디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입니다.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 논의되었던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베트남에서 전쟁이 끝나면 남북통일 선거를 실시해서 통일국가 수립한다는 합의에 서명하자마자 미국은 곧바로 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대항해 승리한 베트남인민이 다시 총을 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처럼 베트남을 포함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동남아방위조약'이라는 대공산권포위전략을 위한 군사동맹체를 만들려는 목적 하에 평화협정이나 통일을 위한 남북 통일선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규정, 조약, 합의사항, 협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되는 까닭은 미국이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50년 동안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이 조약을 지킨 일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한미동맹 해소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나의 견해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2000년 615정 상회담 전에 나는 통일된 뒤에도 통일코리아에 미군주둔을 허용한다는 한미간의 합의를 전 제로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일 수 있다고 비판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군사적 하위동맹이라는 예속적 위치에서 친선우호관계조약으로 대치하면서 그 거리만큼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이 가면서, 남쪽에 상응하는 같은 전략과 정책으로 북쪽의 도움과 협조해 가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평양에 가서 말씀하시면 어떻겠는지 하는 이야기 였습니다.

미군철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근본적 수정 내지 폐기 방향으로의 노력과 관련하여 15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5년간은 군사관계를 제외한 민간 전 분야에 걸쳐서 남북화해, 상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게끔 상황을 만들면서 환경을 조성한다. 그 즈음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상당부분을 축소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휴전선에 배치된 유엔군대를 중립국가 군대로 대치해 나간다.

다음 5년 사이에는 북한과 군축문제를 논의하면서 실제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 위기가 존재할 수 없는, 또 그것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시도 받으면서 미국 으로 하여금 거의 대부분의 무기와 병력, 기지를 철수할 수 있는 준비단계를 한 10년 사이에 완료한다. 한국군대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권도 이 단계에 이양받는다.

나머지 5년은 그런 단계에 오면 이미 평화협정을 체결할 충분한 토대가 될 터이니 그때에 미국이 거부해 온 휴전협정 60조에 의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구함으로서 15년쯤 지나는 시점이 오면 미군주둔이 해소되고, 기지는 철폐되고 동시에 동맹관계는 군사동맹관계에서 평화적 우호 관계로 대치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해 했습니다. 그 시기에 이런 구상이라는 것이 먹혀들어갈 수 있는가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 있는 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역 강대국 누구에게도 불안을 주지 않으면서 한반도 상황을 개선해 나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세계여론으로 하여금 미국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한반도 정세를 끌고나가 동북아 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런 것이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공동성명의 의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 민족이 같은 목소리로 강대국들과 발언했다는 것: 남북 화해를 통해 전쟁의 빌미를 미국이 쥐지 못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그래도 북경회담을 보며 한 가지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남북이 하나의 뜻과 하나의 전략과 하나의 목적으로 강대국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발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말 이래 한반도를 요리하기 위한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수많은 회담에 민족과 국가의 대표가 단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던 지난 110여년의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발언이라도 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해서 말이나마 그러한 성명을 도출했다는 것.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의 전진, 민족의 전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라파에서의 모든 전쟁과 정세불안의 요소가 됐던 발칸반도와 같이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찰로 말미암아 모든 동북아의 불안과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냐, 전쟁이냐 이런 문제는 우리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민족 자신의 대응에 달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동북아시아 세력권, 지배권 다툼을 위한, 미일군사동맹과 중국과의 전쟁위기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과거의 카스라-테프트처럼 필리핀을 주고 조선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경우도 일단은 생각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은, 그 극치는 미국이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최종적인 결정의 전제는 자국의 이익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만과 북한 문제가 동북아에서 패권주의적 국제관계의 해소에 평화적으로 도움되느냐 아니면 전쟁위기로까지 상황악화가 지속될 것인가? 특히 중국의 국력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강화 될 때, 미국 자본주의와 미국 자본주의의 통치 집단이 대만 독립을 부추기면서 중국과의 위기 시국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렇게 볼 때 나는 군축문제에 있어서 탱크가 몇 대고 비행기는 몇 대여야 한다는 이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정세를 총체적으로 전망한다면 우린 더욱 경계를 분명히하고 민족간 화해를 통해서 전쟁의 빌미를 미국이 쥐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에 당분간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지, 북경회담 합의문이라는 종이조각을 토대로 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 민족의 행동을 규정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도의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사태를 살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 이 글은 토론회에서의 강연을 녹취, 발췌한 것임 |편집자 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군축 방안" 1부 발제문 요약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 방안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I. 머리말

[9월 19일 베이징 공동성명]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 이외에도, 제4항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라고 합의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열린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공동보도문 2항에서 "남과 북은 6.15 시대에 맞게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도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합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일방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남북의 군축과 잘 조화시키고 한반도에서 군축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가 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군사적 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들을 이용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군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역시 이제는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구조화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특히 군축을 통한 과도한 군비의 해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평화와 통일은 상대방을 침략하거나 공격하기위한 대규모 군사력을 그대로 둔 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II. 한반도 군축에 관한 합의와 남북한 군축 정책
- 1. 한반도 군축에 관한 기존 합의내용들

[남북기본합의서]는 한반도 군축에 대해 남북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있으며, 군축방법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했다. 2004년 2차 장성급회담을 통해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간 최초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SBM: Confidence-and Security-Building Measures)이다.

또한 지난 9·19 6자회담 [공동성명] 1항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규정하여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약속한 사실, 제16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에서 남북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한 것도 남북한 사이의 중요한 합의사항이다.

2. 남북한의 군축정책과 입장

남북한의 군축제안이 ▲ 접근방식에서는 남측이 단계적·점진적 방식으로 선신뢰구축·후군비 감축을, 북측이 동시적·포괄적 방식을 주장하였고, ▲ 감축대상 우선순위에서는 남측이 무기 감축을, 북측이 병력 감축을, ▲ 감축방법으로는 남측이 군사력을 많이 보유한 측이 먼저 감축을 단행하고 상호 동등한 수준에 이른 후 상호 균형감축하자는 입장을, 북측이 병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남북이 각기 10만 명 병력을 동수 보유하며 이에 상응해 무기를 감축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 남북간의 타협 방안으로 ▲ 군축의 접근방식에서는 신뢰구축조치와 군비감축문제를 "동시 협상, 동시 시행"하는 방안을, ▲ 감축대상의 우선순위에서는 무기와 병력 감축을 같은 협상틀 내에서 동시에 다루어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 감축방법에서는 남북이 동의하고 있는 '동수보유원칙'에 의거해 대상무기와 병력에 대해 목표한 시점에 달성해야 할 남북한의 '동일상한선'을 정하고, 합의된 보유상한선에 이르기까지의 감축방식은 남북간의 기존 보유수 차이를 인정하여 '단계별 동율감축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III. 한반도 군축의 원칙과 방향과 조건

1. 한반도 군축의 원칙과 방향

한반도 군축의 원칙은 ▲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는 "안정성의 원칙", ▲ 남북한에 호혜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는 "호혜성의 원칙", ▲ 한반도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통일지향성의 원칙"이다.

2. 한반도 군축을 위한 조건

한반도 군축을 위한 조건은 ▲ 상호 공격능력의 제거, ▲ 병력의 대폭적인 감축, ▲ 주한미 군문제의 해결과 미국의 군사적 위협 해소이다.

IV. 한반도 군축의 방안

1. 통일국가의 적정군사력

독일, 일본 등 통일국가의 국력에 비견할만한 나라들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때, 통일국가의 적정 병력수는 인구대비 0.3~0.35% 수준이면 충분하다. 이를 예상인구 8천만명에 대입해 보면, 통일국가의 적정 병력수는 24만~28만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표 1] 남북한 군축의 원칙·방향·실천조치 원 칙

안정성의 원칙

호혜성의 워칙

통일지향성의 원칙

방 향

- ●군비를 공격적 성격에서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
- ●대규모 군비를 적정수준으로 감축
- ●군사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 ●어느 일방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 확보 방지
- ●타협과 양보 통해 호혜적인 군축방안 마련
- ●상호체제유지 보장
- ●통일과정에 장애를 초래할 무력충돌 가능성 제거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하는데 기여
- ●통일 후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군사력 고려
- ●동북아 지역차원의 군축으로 확대 발전 모색

실천조치

- ●공세적 군사전략을 '비공세적 방어 전략'으로 전환
- ●공격용 무기의 대폭적 감축
- ●병력의 대폭적인 감축 시도
- ●비무장지대(DMZ)의 완전 비무장지대화
- ●군사적신뢰구축조치(CSBM)의 시행
- ●포괄적인 군축협상 통해 객관적인 군축방안 마련
- ●북한체제의 유지 보장
- ●한반도평화체제 이행
- ●해공군력 중심의 소수정예 과학군 육성
-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구성 추진
- ●동북아지역 군축과 동북아비핵지대 추진

2. 남북한의 적정군사력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군축과정을 ▲ 평화체제, ▲ 국가연합, ▲ 통일국가 등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병력과 주요 공격용 무기 감축 방안을 제시해 보면, ▲ 평화체제단계: 남북

각기 24만~28만명, ▲ 국가연합단계: 남북 각기 16만~18만명, ▲ 통일국가단계: 남북 통합 24만~28만명 정도이다.

또한, 적정 무기수는 ▲ 평화체제단계의 경우, 남북이 각각 탱크: 1,000~1,500, 장갑차: 1,500~2,000, 야포: 1,000~1,500, 공격용헬기: 80~100, 전술기: 350~400, 전투함: 30~40, 잠수함: 10~15, ▲ 국가연합단계의 경우, 각각 평화체제단계의 1/3수준 감축, ▲ 통일국가단계의 경우 국가연합단계에서 또다시 1/3수준을 감축하여 남북이 통합하여 탱크: 1,000~1,500, 장갑차: 1,500~2,000, 야포: 1,000~1,500, 공격용헬기: 80~100, 전술기: 350~400, 전투함: 30~40, 잠수함: 10~15 등을 제시하고 있다.

IV. 맺는 말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방개혁안이 여전히 병력집약형 '대병력주의'에 매몰되어 있고, 국방비대폭 증액 및 군사력 증강 방침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군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남북은 각기 일방적 군축을 단행하는 한편, 상호 군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군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반도 냉전체제를 구조화하고 제도화했던 냉전구조와 제도들을 해체하는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작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냉전체제의 해체는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은 바로 군사적 문제이다. 군축은 이제 분명히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1부 토론 내용 요약

이장 교수(국민대): 군축을 통한 과도한 군비의 해체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 보고, 평화와 통일은 상대방을 침략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력을 그대로 둔 채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철기 교수의 발제문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난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백승주 연구원(국방연구원): 단계적 신뢰구축 즉, '선 신뢰구축 후 군축'입장은 이미 포기했다. 동시 추진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은 이미 진행중이다. 정상회담과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도 했다. 조금 속도가 느리지만 진행되고 있다. 남은 이미국방백서가 나왔기 때문에 북의 국방백서가 나오면 신뢰구축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남한은 북한에 대해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들어 지난 8월에 있었던 을지훈련때도 북측에 참관을 요청했었다. 군사훈련 참관은 신뢰구축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다.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얘기하는 데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문제는 주권의 문제이지 군비통제의 문제로 얘기할 수 없다.

냉전이후 모든 나라들은 상대의 위협에 대한 평가속에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능력에 맞게 군사력을 갖는게 추세다. 위협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지 않고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남과 북의 GDP가 다른데 군사력을 똑같이 가질 수는 없지 않은가? 적정군사력 문제는 북한 위협보다는 주변국 위협을 고려해야 한다. 독도는 슬로건으로만 지킬수 없다.

국방개혁안은 초보적 수준의 안이다. 이번 국방개혁안에 미국의 감시나 강요는 절대로 없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우리 국방개혁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요구했거나 전략적으로 간섭하지 않았다.

박기학 연구위원(평화통일연구소): 한반도 군축을 위한 선결조건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남한의 군비증강정책(협력적 자주국방)을 중지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군축입장과 제안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셋째,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국방부는 아직도 '선 신뢰구축 후 군축'을 자기 입장으로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군축을 회피하려는 의도다. 한미연합훈련의 중지는 신뢰구축을 위해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군사훈련 중지는 남북합의서에도 나와 있고 북에서도수 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남과 미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군사훈련 중지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북에 대해 '참관'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보는 북한이 이런 제안에 응할 리 없다. 따라서 '참관'제안은 명분쌓기이거나 한미연합훈련의 대북공격적 성격을 희석시키려는 술책일 뿐이다. 또, NLL의 불법성이 문제의 본질인 서해교전의경우도 추상적인 '신뢰구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희석시키고 남한과 미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다.

주한미군은 당연히 평화군축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발제자가 주한미군의 성격을 중립적 감 시자로 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백승주 연구원은 국방개혁안에 대한 미국의 감시나 강요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왜곡이다. 국방개혁안에 대해 사전에 미국과 협의했으며, 2004년 SCM공동성명에도 '한국군 현대화를 미국의 군사변혁과 조화되도록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남한의신뢰구축 및 군축방안에도 개입해 신뢰구축을 또다시 몇 단계로 나눔으로써 이 조차도 실행되기 어렵게 하였다. 이것은 곧 미국의 강요나 감시가 일상적으로 있다는 증거다.

한반도 평화협정: 북한 핵문제 근본해결로서의 평화협정의 틀과 윤곽

李 三 星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05년 10월 7일

1. 윤회(輪回): 그 굴레의 구조

한국사회에서 안보관련 전문가집단, 그리고 언론과 정치인들은 북한이 미국을 포함하는 당사자들과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앉게 되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이라고 말해왔다. 남북당사자론이 예외없이 내놓는 이유들에는 언제나 그러한 체념이 있었다. 그 체념은 한반도 안보질서에 대한 냉철한 현실주의적 인식의 표출이기도 하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여부를 직접적이고 근원적으로 결정하는 힘의 한 축이 바로 미국이며, 이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양식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현실의식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북한은 미국을 평화협정 협상에 직접 끌어들이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은 북한은 비이성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목표는 공허하며 실효성도 물론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미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이라는 비전으로부터 거리두기로 끝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북미간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양자간의 결단을 기초로 하는 3자간 또는 4자간 평화협정체제의 무의미성을 역설하는 논리로 나아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긴장의 모든 요인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행태에서 말미암은 것이므로 평화체제구축의 결정적 요소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있을 뿐이라는 논리로 또한 연결된다.

이러한 논리들은 하나의 지배적인 사고패턴으로 자리잡으면서 우리 외교는 우리 자신과함께 북한과 미국을 다같이 평화협정의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노력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갖는다. 북미 양국이 남한과 함께 또는 남한 및 중국과 더불어 다같이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체제는 어차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현실의 구조는 그 결과로 더욱 강화된다. 우리 자신이 그 실현불가능성이라는, 이를테면 하나의 '구성된 구조'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 악순환 구조의 가장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경우 망각된다.

다만 북미관계가 위기로 치닫고 전쟁의 위기가 부활하고 그래서 코너에 몰린 북한이 위험한 선택을 할 때, 그래서 모두의 안보가 더 위험에 빠뜨려지면서 미국의 강압외교가 실패했음이 분명해졌을 때, 그럼에도 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남한에게도 미국에게도 너무 많은 손실을 가할 것이 분명하여 그것은 비이성적인 선택임이 재확인될 때,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비로소 외교적 해결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북미간 고위급접촉이 오가기시작했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다시 평화체제를 거론하고 그 맥락에서 평화협

정을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때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다른 평화협정은 다 좋고 바람직하지만 미국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만은 도움이 안된다는 말을 되뇌이기 시작한다. 미국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은 부지하세월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런 종류의 평화협정을 외면하면서 북한에게 최대의 군사위협이며 그래서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할 당사자가 미국이므로 실효성 있는 평화협정은 미국이 포함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지내온 긴 세월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거나 개탄하는 일이 없다. 그것을 허송세월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면이 가져다주는 이완과 안도와 평화에 관한 얘기들 밑으로 또 한 사이클의 악순환의 회로는 다시 시작되곤 한다.

우리는 이 패턴에 너무나 익숙해있다. 그래서 그 패턴대로 파도타기를 너무나 잘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패턴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의 관점에서 주된 책임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벼랑끝 전술을 부리지만 그것은 강대국이 으레 하기 마련인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결합"일 따름이다. 그래서 미국은 면죄된다. 미국이 특별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며, 미국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모함에 다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나 한반도의 우리의 외교의 숙명적 과제의 한 본질적 요소는 강대국들과 씨름하기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무모함이 아니라, 민족의 안전과 안보를 책임지는 자들의 일상적 의무이행의 본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쉽게 잊어버린다.

1990년대 한국의 안보관련 전문가집단은 여전히 냉전의 사고에 갇혀있었고,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은 그것을 더욱 심화시켰었다. 북미대화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성찰 이전의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졌고, 남북대화에 대해서조차도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기까지 했다. 남북대화와 관련하여서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던지기 시작한 것은 학자들의 선견지명이 아니라 김대중정부라는 현실의 권력이었다. 그 초기에 안보전문가집단에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매우 작게 들렸다. 한국사회 권력관계의 변동이라는 현실에 이끌려 전문가들의 사고는 비로소 윤회의 굴레를 벗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미국의 문제에 관한 한은 현실의 권력도 전문가집단도 그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우리의 언론과 학계를 들여다보면, 미국을 한반도 평화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하게끔 이끌어내는 일은 현실의 절박한 필요에 의해 현실의 권력이 앞서나가고 전문가집단과 언론은 멀찍이서 그 뒤를 따라왔다고 생각된다. 이 패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제 미국은 한국 및 중국과 함께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 하는 일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과연 미국이 책임있는 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에 얼마나준비되어 있는가. 문제는 현실의 권력 못지 않게 우리 사회 지식인사회 전반의 편견의 구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는 과연 이 사회가 미국에 관하여도 그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물음을 던지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미국의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내부의 뿌리깊은 편견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다음 네 가지의 문제를 거론하려고 한다.

그 첫째는 미국이 4자회담 또는 6자회담을 시도했던 시기의 역사적 맥락들을 살펴보는 일이다. 특히 먼저 1990년대 후반 클린턴행정부의 4자간 '평화회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 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 회담과 그 실패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반도에서 의미있는 평화회담에 유의할 일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다자회담은 북미관계의 부침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한편으로 미국은 북미관계의 진전을 회피하기 위해 다자회담을 활용해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점을 상기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다자회담

역시 미국이 북미관계의 진전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한국외교가 유의해야 함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이들 회담에 임할 때 한국내 전문가집단 안에 여전히 깊게 자리잡고 있는, 북미협상축을 남북협상축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인식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돌이켜보기 위해서도 이는 필요하다. 우리는 그 둘을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보아야 하고 한국외교는 회담들을 그렇게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협정에 미국 역시 책임있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에 대한 남한의 전문가집단 전반의 완고한 반대논리들이 협정의 실현가능성, 실효성 그리고 자주성 등 여러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남북당사자론 및 그에 기초한 "2+2" 양식의 평화협정론을 비평함으로써, 남북한 뿐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협정의 정식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를 분명히 하려고한다.

셋째, 평화협정이 담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한다. 이 점은 당사자문제를 포함한 평화협정의 형식과 긴밀히 연관된다. 평화협정이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이끌어내는데 실효성있는 문서가 되려면, 북한 핵폐기의 끝단계에 가서 북한에 평화협정을 허락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핵 해체의 과정을 미국과 한국의 대북한 안전보장의 군사적,외교적 조치들에 긴밀하게 연결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동시행동의 체계로서 평화협정을 생각해야 한다. 이 글을 그러한 한반도 평화협정의 틀과 윤곽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긍정적인 변화의 틀과 긴밀한 상호의 존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형식과 내용이 동아시아 공동안보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그 내용과 형식과 관련해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평화협정과 미국의 태도변화

2005년 7월 22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1953년 이후의 정전체제를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평화체제 구축은 북미사이의 평화적 공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남북간 평화통일의 성취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이 발표는 평화체제구축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이 다같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식적인 평화협정 체결은 자동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1)

미국을 향한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촉구는 한반도 정전체체 해소의 주된 걸림돌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적대정책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매우 유서깊은 것이다. 다만 이번의 성명이 과거의 것들과 다른 것은 미국과 남한정부의 반응이었다. 2005년 7월 하순에 시작된 제4차 6자회담의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4차 6자회담이 휴회에 들어가있는 기간이었던 2005년 8월 중순 워싱턴의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적절한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 네 나라는 4차 회담 기간에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했다고도 말했다. 북한이 원하면 미국은 평화협정

¹⁾ Xinhua News Agency, July 22, 2005.

에 관심이 있으며, 다만 6자회담은 이 문제를 논의할 적당한 장소는 아니라고 했다.²⁾ 미국의 태도변화 가능성, 그리고 제4차 6자회담의 첫 회기였던 7월 말-8월 초의 시기에 미국이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과의 평화협정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한국과미국의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 한국언론은 남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네 나라들은 이 문제를 논의할 별도의 4국 포럼을 구성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힌 것이다.³⁾

미국의 태도변화는 급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미 국무부가 2004년 5월 정례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제임스 켈리 미 국무차관보는 2004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6자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된 후 6자회담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해 같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4)

미국은 2003년 가을 북한에 일정한 안전보장을 약속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는데 이것은 부시행정부로서는 처음이었다. 물론 그것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때에도 부시대통령은 북한과 공식적인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분명하게 배제했었다. 또한 당시 미국은 북한과의 합의는 어떤 형태든 북미 양자간에는 있을 수 없으며 6자 틀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다만 당시 콜린 과월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프로그램 해체를 약속하면 북한에 안전보장약속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힌 것은 유의할 점이 있었다.5)

2005년 7월 말의 제4차 6자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드러나고 있던 미국의 평화협정 관련 태도는 2005년 9월 한국정부가 북한에 평화협정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에 이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 무렵 한국정부 관리들은 8월 초 제4차 6자회담 첫 회기때 중국측이 마련한 합의문 초안에 한반도 평화에 관한 포럼을 구성하자는 제안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6) 중국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전개는 결국 2005년 9월 13일에 속개된 제4차 6자회담의 두 번째 회의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Joint Statement)으로 이어졌다. 이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들을 폐기하고 조속히 핵무기비확산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협정체제에 복귀하는 것을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의 주권을 존중할 것과 함께 평화협정체제 구축에 나설 것을 약속하였다. 평화협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동성명 합의사항은 먼저 공동성명의 2항에서

^{2) &}quot;U.S. willing to discuss peace treaty with N. Korea," August 19, 2005, Chosunilbo.

³⁾ 최상연, 서승욱,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남북미중 공식 논의키로," <중앙일보>, 2005년 8월 8일; Ryu Jin, "NK, U.S. to Discuss Peace Treaty," *The Korea Times*, August 8, 2005.

^{4) 2004}년 5월 3일자 미 국무부 대변인실 자료에 따르면, "켈리 차관보가 지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페기를 조건으로 북한에 평화협정을 제안했는가?"라는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2004 년 3월 2일 상원외교위원회 증언에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유럽에서와 같은 수많은 심층적인 대화는 아시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더 폭넓은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능성의 맥락에서 베이징 6자회담 2차회의에서 켈리 차관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동북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초를 놓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으며, 이런 관점에서 켈리차관보는 핵문제 해결후 6자가 같이 노력하여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Spokesman, "North Korea: Kelly Remarks," May 3, 2004.

^{5) &}quot;Bush rules out peace treaty with Pyongyang," Chinadaily, October 20, 2003.

⁶⁾ Agence France Presse, "South Korea proposes talks with North on peace treaty," September 12, 2005.

시작된다. 2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양자정책들에 따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들을 취한다"고 하였다.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한다"고 한 4항은 특히 "직접당사국들"(the directly related parties)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에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a permanent peace regime)를 협상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6자는 동북아에서 안보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는데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요컨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따로 1996년 4월 미국이 언명하고 시도한 바 있던 4자회담형식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구상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러시아와 일본 역시 승인한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다자안보체제를 구성해가는 계기로 삼는다는 점 역시 시사되어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핵심당사국들이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주장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도달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구체적 모습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문제가 제기하는 몇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분별해내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미국의 태도 변화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러한 변화의 맥락이 향후 가능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던지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미국의 태도변화의 배경과 그 의미

부시행정부하에서 미국은 9/11이후 이른바 대테러전쟁을 시작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이후 북한을 협상의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특히 2002년 10월 이후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핵무기개발을 위한 비밀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군사, 외교, 경제전반에 걸친 압박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 항복을 강요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3년 4월 중국 및 북한과 함께 3자회담을 계기로 남한,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3년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일련의 6자회담(2004년 2월, 2004년 6월, 그리고 2005년 7-9월)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한반도문제에 적용한 "다자회담"의 애초 목적은 미 의회조사국의 한 보고서가 명백히 하고 있듯이 협상이 아닌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 전략의 표현이었음은 매우 분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세 가지였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 요구, 북한과의 직접협상 회피, 그리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 강화가 그것이었다. 부시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이른바 리비아모델에 따라 북한의 핵프로그램들 역시 무조건적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를 요구한 것은 그 표현이었다.7)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목표는 크게 두가지 요소를 가졌다. 하나는 핵문제에 대해 북한을 다른 국가들의 지지로부터 고립시켜 미국의 요구인 CVID를 북한에 요구하는 국가블럭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그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할 국가들의 연합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의회조사국보고서는 미국이 2003년 5월 이후 10여개의 다른 나라들과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⁷⁾ Larry A. Niksch, "Korea: U.S.-Korean Relations--Issues for Congres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pdated June 16, 2005.

Security Initiative: PSI)을 구성한 것은 북한과 같은 확산위험국가들의 대외무역과 외화획 득원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여 경제봉쇄를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그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8)

미국이 2003년 봄 이후 6자회담을 추구한 것 역시 적어도 초기에는 그러한 정책목표들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다. 우선 6자회담은 미국이 북한과 양자협상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나중에는 6자회담 안에서 양자접촉을 시도하지만 2004년 6월에 열린 3차 6자회담이전까지는 6자회담 안에서도 북한대표단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있었다. 또한 부시행정부의 전략에서 6자회담은 미국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의 대북한 CVID 요구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내는 수단이었다. 미국 관리들이 6자회담 안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5 대 1의 상황(a five-versus-one situation in the six-party talks)을 만들어서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얘기를 해온 것은 정확하게 그러한 맥락에서였다.의 미국은 특히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중국을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연합에 동참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식량의 40퍼센트와 원유의 90퍼센트를 제공하는 국가였기 때문이었다.10)

결국 2003년 이후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북한과의 상호주의적 협상을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한과의 양자협상의 산물인 1994년 제네바합의틀을 부정하면서 다자간 외교압박을 통해 북한의 굴복을 얻어내려는 '회피와 압박'의 전략의 표현이었다.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이같은 초기역사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2004년 2월 이후 북한과의 평화협정체결을 가능한 선택으로 거론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2005년 9월 4차 6자회담의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논의를 약속한 것은 커다란 정책의 전환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럼 이같은 태도변화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의 핵무기프로그램 폐기를 이끌어내는 데에 미국의 일방주의는 점증하는 장애에 직면해왔다. 9/11이후 미국이 전개한 대테러전쟁은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장악력을 높이고 미국의 헤게모니적 리더십하에 세계를 하나로 묶는 효과를 가져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고립된 몇 개 국가들에서 값비싼 전쟁을 치르면서 또한 유럽,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경계는 높아졌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개한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외교적 압박 위주의 전략은 명백한 한계에 부딪쳤다. 중동에서와 달리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강력한 국제적 저항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동아시아질서 차원에서 미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대북한 군사행동 가능성에 있어서 1994년 5월과 6월에 클린턴행정부가 직면했던 동아시아질서에서 직면했던 딜레마에서 2000년대의 부시행정부 역시 벗어나기 어려웠다. 상호주의적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만이 대안일 수 있었다.

둘째, 한반도의 6자회담 참여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대북한 정보평가와 정책은 신뢰성을 상실해왔다. 이것은 미국의 강압외교가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적 조건을 형성

⁸⁾ Niksch, "Korea: U.S.-Korean Relations," p.4. PSI가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를 통해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항복 또는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려는 수단으로 그 주창자들이 의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 자료 참조: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pdated May 6, 2005, p.4.

⁹⁾ Niksch, "Korea: U.S.-Korea Relations," p.4.

¹⁰⁾ Niksch. "Korea: U.S.-Korea Relations." p.4.

하는 것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었다. 부시행정부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국무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1994년의 북미간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CVID를 요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그것을 정당화한 근거는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어기고 고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추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 핵관련 정보평가는 북한이 부인하는 우라늄 핵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실패했다.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의 명분이었던 후세인정권의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한 미국의 정보평가의 실패,12) 그리고 더 나아가 정보왜곡을 통한 전쟁의 정당화 양상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 전반과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회의와 비판에 직면했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비밀핵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한 미국의 정보평가와 증거제시가 중국 및 러시아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2003년 7월 초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성명을 채택하고자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패한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무기개발 의혹에 관한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국 및 러시아 설득외교의 실패의 첫 사례에 불과했다. 2004년 6월 9일 <뉴욕타임스>는 중국 외교부 부부장 주웬종이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존재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주장에 공개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기는 미국의 대이라크정책 및 대북한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뢰성을 크게 상실하고 '지도력'을 상실한 시점이었다는사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13)

6자회담을 통해 애당초 미국이 의도한대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5대 1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일동맹 대 다른 네 나라라는 4대 2의 상황으로 전환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보평가와 정책의 신뢰성 상실이

¹¹⁾ 이삼성, "미국의 대북한 정보평가와 정책의 신뢰성 위기와 북핵문제 해결방향: '한반도평화협정'체제가 유일 한 대안인 또 하나의 이유." <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04년 9월 30일.

¹²⁾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 비밀 프로그램의 존재를 주장하고 나선 2002년 10월은 미국이 또한 이라크에 대한 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하여 이라크의 후세인정권 역시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비밀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부시행정부가 이들 두 '불량국가들'의 우라늄농축 핵무기 프로그램 존재의 증거로 제시한 것 역시 우라늄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용 고강도 알미늄 튜브에 관한 것이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왜곡되고 잘못된 것임이 이미 판명되었다.(이 점은 미국 CNN방송이 2005년 8월 20일과 그후 몇차례에 걸쳐 방영한 1시간분량의 도큐멘터리 《Dead Wrong: Inside an Intelligence Meltdown》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프로그램의 증거에 관한 것이라고 내놓은 정보평가 역시 미국의 의회조사국의 한 보고서에 드러나듯 여러 가지 의문에 직면해왔으며 국제사회의 신뢰 획득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삼성 (2004), 위의 논문.

^{13) 2005}년 6월 28일자 〈뉴욕타임스〉는 터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참석을 앞둔 부시 대통령이 유럽에서 직면한 외교적 상황을 한마디로 "미국 외교력의 추락"(diminished diplomatic strength)로 요약하고 있었다. 부시는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이라크에서 미국을 돕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지만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과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기구들로부터도 저항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이라크의 안보 및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계획들을 재검토하게끔 만들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저항하는데 합류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신문은 나토 안에서 집중적인 로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시는 유럽의 동맹국들로부터 "군사훈련단 같은 형식적인 형태 이외의 도움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북한에 대해서도 아시아 동맹국들의 압박에 의해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핵프로그램 폐기를 얻어내려는 강경책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6자회담의 주최국인 중국이 그러한 변화를 촉구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그러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파악했다. Christopher Marquis, "As Bush Confers with NATO, U.S. Is Seen Losing Its Edge," *The New York Times*, June 28, 2004.

상당부분 자초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14)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부시행정부가 지나온 길은 1990년대 1차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에 처하여 클린턴행정부가 걸어간 길을 상기시킨다. 당시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미국 자신의 안보까지도 위협하는 국제문제로 부각시키며 군사적 압박을 앞세우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를 전개한다. 리언시걸은 부시행정부 말 이후 클린턴행정부 초기에 이르는 3년에 걸친 강압외교가 실패한 후에야 미국은 '협력'을 선택했다고 평가한다.15) 그것이 제네바북미합의였다. 군사적 위협을앞세우는 외교는 북한을 굴복시키는데 실패했었다. 미국이 강압외교로 일관하는 사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인식하는 북한의 핵무장위협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그렇게 인식된 북한의 핵무장위협을 군사압박의 종점인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순간 미국은 그것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가와 비용을 초래할 것을 실감하였다.16) 미국은 결국 북한과 협상테이블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의 방북사건이후 전개된 2차 위기를 부시행정부가 대처해온 양상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시행정부의 6자회담이 북미협상 회피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마침내 북미협상 역시 포함하게 될 평화회담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이른 또 하나의 이유는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해온 북한이 그 핵심내용으로 거론해온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북미간에 타협점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형성된 점은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정부가 1974년 3월 25일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북미평화협정체결 제안은 미국 연방의회에 보내는 서한 형식을 띠고 있었다. 이 서한에서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은 첫째, 북미 양측이 상호 불가침을 약속할 것. 둘째, 북미 양측이 군비확장을 중단하고 한국에 무기 등 전쟁물자 공급을 중단할 것. 셋째, 한반도에 주둔한 외국군대는 '유엔군'의 모자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기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철수할 것. 넷째, 모든 외국군대가 한국에서 철수한 후 한반도를 어떤 외세도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 만들지 않을 것 등 네 가지를 담고 있었다.17)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은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에 미국과 한국이 응할 가능성은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특히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북미관계 정상화의 가능성이 떠오른 이후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핵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부각시켜 협상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병행했던 미국의 군사력과 군사정책을 북한은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란 곧 주한미

¹⁴⁾ 필자는 2004년 가을에 발표한 앞의 논문 "미국의 대북한 정보평가와 정책의 신뢰성 위기와 북핵문제 해결방 향"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이어 〈포린 어페어즈〉지 2005년 1/2월호는 셀리그 해리슨이 역시 같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논문을 실었다. Selig S. Harrison, "Did North Korea Chea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5.

¹⁵⁾ Leon V. Sigal,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5.

¹⁶⁾ 클린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1994년 6월 초 지미 카터가 평양방문을 자신에게 요청했을 때 처음엔 말렸으나, 곧 허락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카터의 북한방문요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기 3주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지적한 평가보고서를 받았었다고 말하였다. Bill Clinton, My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2004, p.603. 당시 한반도 전쟁위기가 카터의 방북으로 우연히 평화적 협상의 계기를 찾게 된 것이 아니라, 카터의 방북을 친히 승인한 클린턴의 행동은 이미 더 이상의 군사압박은 현실성을 잃었으며 협상만이 남은 선택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평양에서 CNN을 통해 긴급뉴스로 세계에 타전된 카터에 대한 김일성의 약속이라는 것은 북한이 주장해온 일괄타결 원칙에 기초한 협상방안의 재확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¹⁷⁾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etter to Congres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25, 1974, KCNA.

군 철수의 청사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1995년의 '나이리포트'로 확인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역시 기존의 수만명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10만의 전진배치병력을 동아시아에 유 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었다.18) 역시 타협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북한은 탈냉전체제의 실현의 핵심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요문제로 거론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탈냉전체제의 형성이 자신의 기존 군사전략에 던지는 충격을 두려워하였다. 북한과 제네바합의에 임하면서도 북한의 붕괴가 임박하였다고 믿고 그로 촉발될 혼란상황을 자신이 주도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도 미국은 냉전시대군사전략의 변경을 상상하지 않았다. 주한미군과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북미 양측의 이같은 인식 차이는 곧 평화협정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크게 제약했다. 그 한가운데는 물론 주한미군의 지속이 한국안보의 근본조건이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북미간의 평화협상이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을 내포할 경우 그 어떤 협상의 실질적 진전도 원하지 않았던 한국정부의 태도가 있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일정한 역할 변화를 전제로 평화체제하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미국은 또한 동아시아에서 미군 전진배치전략의 개편을 통해 주일미군 중심의동북아 미군사력 전진배치전략을 강화하면서 주한미군은 그 의미를 상대적으로 제한할 용의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 군사전략에서 한반도를 전진기지로서보다는 완충지역으로서, 그리고 주한미군은 그 완충지역의 관리자 역할로 조정함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북한과 일정한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19)주한미군에 대한 타협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북한은 동상이몽을 할 수도 있고, 착각을 하고있을 수도 있으나, 평화협정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는 상대방의 일정한 양보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시에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이 나누었다는 주한미군관련 대화는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진심이 무엇인지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 부인할 수 없다. 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긍정적'역할에 일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말 이래 김대중정부하에서 햇볕정책이 도입되고 2000년대 노무현정부하에서 도 그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한미군의 의미에 대한 남한 사회안에서의 인식이 의미있는 변화를 보인 것도 유의할 점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책임의 한국이관,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화력전 책임의 한국이양 등, 휴전선 근접지역의 직접적인 군사역할에서 미국은 물러나고 있다. 육군부대들의 후방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동시에 이러한 주한미군의 구조조정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미 군사력 전진배치전략의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미국과 북한 사이에 주한미군의 향후 존재양식에 대한 일정한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힘의 관계상 어떤 선에서 타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과 평화협정체결에 응하면 주한미군 문제에 북한이 타협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¹⁸⁾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n-Pacific Region*, February 1995.

¹⁹⁾ 다음의 논문은 김정일과 북한정부가 평화협정을 맺는 대가로 주한미군의 역할의 중립화를 통해 그 주둔지속 의 합법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Kim Myong Chol, "Kim Jong-il's Peace Policy,"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Special Report Policy Forum Online #13, January 6, 1998.

이 추이와 배경에 비추어볼 때,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 안에서 북미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협정의 내용과 형태는 두가지 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핵비확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평화협정에 동의하기에 이른만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과 이행을 확고히 강제하는 형식과 내용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이같은 비핵화 이행요구에 상응할만한 군사적 안전보장의 문제를 핵심으로 간주할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의 주둔지속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해 북미 양측은 일정한 타협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지속 자체는 용인하되 궁극적인 철수라는 명분과 함께 신무기체계의 도입중단 등을 포함한 군사적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평택이전과정에서 북한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후방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등에 대해 중국과 북한, 미국과 남한 사이에 일정한 조정이 모색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공약하고 이행하는 대가로 평택시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최대한 얻어내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체제 하의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지속 여부는 북미간의 타협가능성과 별개로 한반도 평화 및 장차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외세의 개입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우리 자신의 전략적 목표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4. 1990년대 후반 4자 '평화회담'의 역사적 성격

1996년 4월 미국 클린턴행정부는 한국의 김영삼정부와 함께 북한과 중국을 향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4자회담을 제안했다. 이후 북한이 1997년 6월 참여하겠다고 나서면서 1997년에서 1999년 8월에 이르기까지 여섯 차례의 4자간 본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이 일련의 회담들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회담이 진전을 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는 "미국만을 상대하려는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시기 미국이 제안하고 진행시킨 4자회담의 성격과 그 운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 우선 미국과 한국정부가 4자회담을 제안한 1996년 4월의 시점이 북미관계, 남북관계라는 큰 맥락에서 어떤 시기였는가, 그리고 이후 북미관계의 부침 속에서 4자회담은 어떤 운명을 겪게 되는가, 그리고 북한이 평화체제의 근본요소로 간주하는 것들에 미국은 진지하게 협상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1) 북미관계의 부침과 4자회담의 위치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합의로 북한은 핵동결에 들어갔고 그 한달 후인 11월 2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합의이전에 영변과 태천에 진행하고 있던 핵시설 건설이 이제중단되었으며 이들 시설은 더 이상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공식확인한다.²⁰⁾ 1996년 4월은 북한이 합의 타결과 함께 그 이행에 들어간지 1년 반이 되어가는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와동시에 의미있는 진전을 보였어야 할 북미관계정상화, 경제제재 해제, 그리고 경수로 제공등 미국측 의무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불만을 가졌던 북한은 1997년 2월 계

²⁰⁾ Arms Control Association, "Chronology of U.S.-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Diplomacy," January 2003. (http://www.armscontrol.org/factsheets/)

속 진전이 없을 경우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다. 미국이 그 합의를 지키지 않는 다면 북한 역시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미국정보기관들은 또한 북한이 금창리에 비밀핵시설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그런 가운데 북미합 의이행에 진전이 없자, 북한은 1998년 4월 말 영변원자로를 유지관리목적으로 재가동할 것 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이 선택한 것은 제네바합의의 파기가 아니라 미사일시험 을 재개하겠다는 위협이었다. 1998년 6월의 일이었다. 북한이 내건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21) 이 위협은 곧 1998년 8월 31일의 대포동미사 일 발사라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곧 윌리엄 페리 전국방장관에 의한 대북정책재 검토로 이어지지만, 4자회담을 통해 북미를 포함한 4국간에 일련의 평화회담이 진행중인 시 기에 이러한 사태가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22) 이 시기 내내 북 한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최대이유는 물론 미국이 북미관계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 는 점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정부와 더불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한다"는 명분 으로 주도하고 있던 4자회담은 어떠한 목적을 가진 것이었는가.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미국이 진행할 의무가 있었던 대북한 외교정상화 즉 대북한 적대정책 포기를 명분을 세워 지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4자회담이 활용되고 있었다는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두 나라가 4자회담을 제안한지 1년이 넘은 후인 1997년 6월에야 북한이 응하고 나선 것은 그러한 의문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물론 남한이 포함되는 4자회담에 북한이 한동안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 말고도 없지 않았다. 1994년 7월 김일성주석의 사망이후 남한에서 전개된 '김일성전범론'과 조문논쟁 등으로 김영삼정부하 한국이 포함되는 회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결국 4자회담에 나서게 되었다. 왜 응했을까. 제네바합의에 따른 북미관계 정상화와 경수로제공 작업의 신속한 진행 등 북한의 희망은 제네바합의 타결후 약 3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여 제네바합의 이행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여의치 않았다. 북한이 원하는 관계 정상화는 제네바합의의 이행으로서가 아니라 4자회담이라는 새로운 협상에 응해서 그것이 타결될 때에나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과 한국정부는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은 미국이 내세운 4자회담에 참여해서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에 응하는 도리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 1997-99년 사이 진행된 4자회담에서 무엇이 회담진전의 진정한 장애물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 회담에서 무엇이 주요 논점이었는가는 예를 들어 1998년 3월에 열린 제 2차 4자회담이 무산된 것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협상 그리고 별도의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안건에 올릴 것을 북한이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미국 공보국의 평가가 드러내준다.23) 이를 두고 북한이 진정으로 북미관계정상화를 앞당기기를 원했다면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주장들을 고집하지 않았을 것이며, 결국 북한은 4자회담 틀에 진정한 관심이 없었다

²¹⁾ Leon Sigal, "North Korea Is No Iraq: Pyongyang's Negotiating Strategy," *Arms Control Today*, December 2002.

²²⁾ 이 시기 북한의 행동들을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포함해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벌인 협박행위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리언 시걸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이 협력으로 나오면 협력하고 워싱턴이 협력을 중단하면 그에 대해 보복으로 대응하는 일종의 '되갚기'(tit-for-tat)의 전략적 행위였다고 파악한다. Sigal, "North Korea Is No Iraq," 위의 글.

²³⁾ USIS Washington File, "Korea Four Party Talks Resume: Third Plenary Opens in Geneva" by Wendy Lubetkin (USIA European Correspondent), October 21, 1998.

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이 역시 해석하기 나름이다. 북한은 '평화체제구축'을 명분으로 한 4자회담에 참여한 이상, 북미관계정상화를 신속하게 이루어낸다는 목적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북미관계정상화의 완성을 의미하게 될 평화협정이 북한의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서 주한미군철수문제를 회담의 안건에 올려야 한다는 원칙론을 북한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매 회담에서 북한과 한미양국 사이에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24)

제네바합의에 따라 미국이 응당 진행해야 할 대북한 관계정상화 의무이행이 4자회담의 성과에 연계되는 사태를 북한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을 협의하는 자리인 4자회담은 제네바합의 및 그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들과는 별도로 북한이 그간 평화협정이면 평화협정으로서 담아야 한다고 스스로 말해온 원칙들을 주장하는 자리로 삼았던 것이다. 사실 마지막이었던 1999년 8월에 열린 6차 회담에서 북한은미국이 평화협정에 응한다면 북한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었다. 25)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4자회담이 1999년 8월 6번째 본회담을 끝으로 중단되는데, 그것은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복원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사실이다. 미국 사찰단이 북한 금창리를 방문하여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한 것은 1999년 5월 말이었다. 1998년 11월에 클린턴대통령에 의해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미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미국의 안보관심사를 존중할 용의가 있다면 북미 양자관계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약속한 것은 바로 그 직후인 1999년 5월 25-28일의 일이었다. 26) 그해 9월 북미 간 베를린회담에서 북한은 장거리미사일시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한다(실제 해제는 2000년 6월에야 시행된다). 27)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금호에 두개의 경수로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턴키계약에 마침내서명한 것도 1999년 12월인데, 제네바합의가 있은 지 실로 5년이 넘은후의 일이었다.

윌리엄 페리가 대북정책검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은 1999년 9월 15일이었다. 이보고서에서 페리는 "대북한 협상에 관한 새로운 포괄적이며 통합된 접근"을 제안한다. 그것은 "단계적이며 상호적인 방식"을 의미했으며, 잠재적인 유인책으로 외교관계정상화와 무역제재 완화 등을 지적했다. 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공식제출하기 이전인 그해 5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클린턴대통령의 친서 형식으로 북한에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페리는 평양방문에서 북한이 "제네바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종류의 핵무기관련활동" 및 탄도미사일개발과 확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관계정상화에 응하며 일정한 대북한 안보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

²⁴⁾ Shi Min(Director of the Asia-Africa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of th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Under the State Council, PRC), "The Basic Trends of Development on Korean Peninsula," (Korean Peninsula: Enhancing Stability and International Dialogue), 1-2 June, 2000, Roma.

^{25) 1999}년 8월 7일자 <한겨레신문>은 이 회담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조약과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보도하면서,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에 응한다면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에 같은 날짜 <중앙일보>는 "북한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메시지는 결국 본회담의 안건은 북미사이의 평화협정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남한과 중국은 배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GlobalSecurity.org Newsletter, "North Korea Presses For A Normalization with the U.S."

²⁶⁾ Arms Control Association, "Chronology of U.S.-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Diplomacy," January 2003. (http://www.armscontrol.org/factsheets/)

²⁷⁾ Arms Control Association, "Chronology of U.S.-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Diplomacy," 위의 자료.

페리가 1999년 5월 말 평양에서 거론한 "제네바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종류의 핵무기관련활동"이란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개발 의혹 내지는 금창리의혹과 같이 기존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핵시설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의문을 지적한것일 터이다. 아울러 페리가 그 시점에서 거론한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에 관한 문제 역시제네바합의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는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규범에지나지 않으므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미사일개발과 수출은 자국의 주권적사항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이 새롭게 미사일문제를 제기하며 관계정상화 등 약속이행을 미루자 북한은 1996년 1월 미국과 미사일확산문제에 관한 북미회담에 응하기로 한다. 그러나 같은 1996년 4월 21-22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북미 미사일회담에서 북한은 미사일문제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미사일개발수출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별도의 보상을 거부했으며 이것은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한 제제해제와 관계정상화를 거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명분으로 기능했었다.

1999년 5월 페리의 평양방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별도의 적절한 보상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요구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후인 2000년 7월 12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5차 북미 미사일회담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일주일 후인 2000년 7월 19일 김정일위원장은 러시아 푸틴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위성을 대신 발사해준다면 별도의 보상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게 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북미외교가 활성화되었고 마침내 그해 가을 마들린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 등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클린턴대통령이 방북의사를 전달하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했던 이같은 북미관계진전이 좌절된 것은 2000년 11월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당선이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2000년 7월 김정일위원장이 미사일문제에 관련해 미국에 주장해오던 별도의 보상요구를 접고 먼저 양보를 시사하기에 이른 것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김대중정권이 제공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하고 있는 수억달러의 돈이, 당시 북미관계진전을 가로막고 있던 북한의 미국에 대한 미사일문제 관련 별도의 보상을 남한정부가 대신 지불한 것으로서의 의미와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을 필자는 2004년의 한 글에서 밝힌 바 있다.29)

여기서 재차 확인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미사일문제에 대해 북한이 미국에게 별도의 보 상요구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였던 1999년 5월 페리의 평양방문 시점은 어떻든 북미간의 고 위급 관계가 복원된 것을 의미하였고, 이 이후의 북미관계의 일정한 진전이 4자회담의 중단 과 깊은 관계가 있어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태전개를 두고, 북한의 집요한 북미양자관계 중심의 외교가 관철되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시기에 제네바합의 이행을 명분 있는 방식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4자회담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활용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

4자회담은 그처럼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수단이었던 동시에 북한 핵문제 해결방식이 북미간 양자협정에 의해서 결말지어진 것으로 인해 높아진 한국정부의 불만을 수렴하는 한 방편이기도 했다. 미국은 미국대로 제네바합의로 북미관계정상화의 압력과 함께

²⁸⁾ Arms Control Association, "Chronology of U.S.-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Diplomacy," January 2003. (http://www.armscontrol.org/factsheets/)

²⁹⁾ 이삼성(2004), "미국의 대북한 정보평가 및 정책의 신뢰성 위기와 북핵문제 해결방향," 앞의 논문, 41-42면.

장차 평화협정체결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 상황을 부담스러워하였을 것이다. 클린턴행정부의 이같은 고민은 1994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뉴트 깅그리치가 이끄는 공화당 보수혁명으로 상하양원을 보수적인 공화당이 장악하게 된 사태로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제네바합의 후 직면하게 된 이같은 외교적 도전들을 미국은 4자회담을 통해 완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국정부는 북미간 제네바합의 이후 "남북당사자주의 원칙"을 더욱 격렬하게 내세웠다. 한반도의 평화협정은 남북이 체결할 일이며, 미국과 중국은 그것을 보증하면된다는, 당시 한국정부 안팎의 "2+2 평화협정"론은 당시 미국의 필요와도 잘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1994년 10월 북미합의가 이루어지자, 이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낀 김영삼정부와 함께 미국이 4자회담을 제안하는 외교적 조치를 취한 것은, 남한 이승만정권이 거부한 가운데 맺어진 북미중간의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맺어진지 1년여후인 1954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것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당시 한국의 김영삼정부가 북미관계진전에 대응한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어보인다. 김영삼정부는 북미관계의 더 이상의 진전을 막기 위해4자회담 제안에 적극 나선 측면이 있으며, 이것은 당시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1999년 후반부 이후 일정하게 북미관계가 복원되어가는 사태에 당시 한국의 김대중정부가 대응한 방식은 그와 대조적이었다. 김대중정부는 북미관계 복원을 남북관계의 극적인 진전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화답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절정에 이르렀던 당시의 남북관계진전은 다시 북미관계의 더 한층의 발전을 뒷받침했다. 선순환의 동학이 가동되었던 것이다.

(2) 클린턴행정부에게 4자회담은 평화회담이었는가

제주회담에서 김영삼과 함께 북한에 대해 4자회담을 제안할 때, 클린턴행정부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위해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릴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클린턴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제주회담을 언급한 내용, 그리고 그 제주선언 이후 곧바로 이어진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동아시아군사전략의 틀을 제확인하고 있는 태도에서 그 점은 분명했다. 제주선언과 관련해 클린턴은 말했다: "김영삼대통령과 나는 한국전쟁을 끝낸 46년된 정전협정의 다른 서명자들인 북한과 중국과 함께 4자회담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북한과 남한이 회담을 하여 최종적인 평화협정(a final peace agreement)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해왔다. 나는 그들이 과연 진지한 것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믿었다."30)

그러나 클린턴은 바로 이어서 일본을 방문해 가진 미일정상회담에 관해 길게 언급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본, 한국, 그리고 여타 동아시아지역에 총 10만명의 미군을 계속 주 문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31) 당시 클린턴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4자회담 제안이라는 아이디어에 과연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한국정부에 대한 의전적 배려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논란이 일었으며, 이러한 의문은 클린턴이 제주회담 직후 방문한 일본에서는 2박3일에 걸친 본격적인 정상회담이었던데 비해서 그가 제주도에 머문 시간은 불과 몇 시간에 불과했다는 상징적인 사실과 함께 거론되었다.32)

³⁰⁾ Bill Clinton, My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2004, p.707.

³¹⁾ Clinton, Ibid.,p.708.

지금도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은 '평화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이기도 하다. 클린턴행정부하에서 4자회담이진행되던 1990년대 후반의 김영삼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북한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정부 또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통일후 주둔 문제에 대한 주장은 확고한 것처럼 보였다. 4자회담의 명색이 평화체제구축과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평화회담이라면 마땅히 주한미군문제 역시 안건으로서 채택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한국의 두 정부들은 모두 원천적으로불가하다고 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주한미군문제 안건채택 주장은 북한이이 회담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치부되었다.33) 하지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평화회담이라면 응당 정전협정에서도 합의된 외국군철수문제가 적어도 "안건으로서채택"되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를 거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야말로 스스로 4자회담을 평화회담으로서 간주하고 않고 있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었다.

(3) 클린턴행정부의 4자회담과 부시행정부의 6자회담: 그 시작과 끝

클린턴행정부는 그처럼 북미간 합의이행을 명분있게 거부할 명분으로서 4자회담을 적절히 활용한 측면이 있었다. 미국정부의 이같은 지연전략에 불만을 가진 북한은 1998년 8월말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것은 미국이 페리프로세스(Perry process)라는 절차를 통해 명분있는 방식으로 북미관계를 복원시키는 과정을 출발시켰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부시행정부는 2002년 가을 이후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압박의 틀로서 6자회담을 선택했다. 이후 2005년 9월 제4자 6자회담이 만들어낸 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의 북미관계 역시 비슷한 패턴을 밟아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6자회담 역시 공허하게 진행시키는 가운데 북한의 핵 보유선언과 '핵 억지력'확대라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로소 다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게 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1999년 클린턴행정부가 북미관계 복원에 나서면서 4자회담을 미련 없이 버린 것과는 달리, 부시행정부는 6자회담의 합의라는 형식을 통해 4자간 평화협상의 틀을 향후 북미관계 복원의 명분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클린턴행정부는 북미합의에 임했다가 그 합의이행을 지연시킬 합법적 명분으로 4자회담을 활용했고, 그러한 지연외교가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자 4자회담을 버리고 다시 북미관계복원으로 돌아갔다. 임기 말인 2000년 클린턴 자신의 평양방문까지 고려했던 것이므로 북미관계정상화와 북미평화협정 또는 불가침조약 등의 가능성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것이었다. 부시는 처음부터 북미 양자협상을 거부했고, 그 대신 가능한 광범한 대북한 국제압력을위해 6자회담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미대화 회피와 대북한 강압외교 전략은 현실적으로 더 위험한 국면을 초래하였다. 결국 부시행정부는 강압외교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형태의 4자 평화회담 추진에 임할 용의를 공식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한국과 함께 어떤 종류의 4자회담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32) &}quot;A North Korean Perspective on the 4-Way Talks Proposal,"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Daily Report, May 15, 1996.

³³⁾ 마지막 4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1999년 8월 9일 <조선일보>에 실린 한 칼럼은 "북한의 미군철수주장은 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못박았다. GlobalSecurity.org Newsletter, "The Way to Look at the North Korea Issue."

클린턴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북미대화를 회피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강압외교 전개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를 당사자로 포함하는 실질적인 다자간 평화협정체결을 준비할 것인가. 만일 부시행정부가 전자를 선택한다면 향후의 4자회담에서도 1990년대 말 북미관계 복원 시작 이전에 클린턴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평화협정체결을 남북간으로 미루고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 등 북한이 핵심안건으로 제기할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북미대화를 회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과거 한국정부가 동원했던 남북당사자 논리에 동조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이 만일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북미대화를 포함하는 형식의 4자 평화회담을 의미하게 될 것이며, 이 회담에서 논의되는 평화협정의 틀은 미국 자신을 당사자로 포함하는 형대가 될 것이다.

- 5. 한반도 평화협정과 '남북당사자주의,' 그리고 "2+2"의 논리
- (1) 평화협정과 미국의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상황

한국의 언론 및 정부와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거론하는 경우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는 관점이 "완전하게" 지배해왔다. 이유가 무엇이든 북한이 많은 세월 미국과의 양자간 평화협정체결에 집착하여온 것과 유사했다. 그러한 입장에 유동성이나 유연성의 징조가 있었다면 그것은 북한쪽이었다. 남한사회에서 미국을 직접당사자로 상정하는 평화협정론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쪽에 가까웠다.

학계에서의 연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훌륭한 연구들이 나타났으나, 결론들은 미국이 협정 당사자로 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협정당사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법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많은 정력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당사자의 하나였던 미국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당사자가되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설득력이 부족한 채로 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반드시 평화협정의 당사자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들여 설명하려 하면서도, 미국도 당사자가 되면 왜 안되는지, 그리고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은 언제나 부족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판단을 일별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또는 남북간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논의로는 최철영의 최근연구가 대표적이다.34) 최철영은 북한은 1998년 10월 "평화보장체제는 북미간 평화협정이체결되고 평화보장기구가 마련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2000년 9월 남북한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루는 데는 북미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대체하고 이후 남북간 군사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한 점을 주목하였다. 북미평화협정 주장에 대해 최철영은 남북평화협정을 제안한다. 또한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국 등 주변강대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다자간 안전보장체제는 옥상옥일 뿐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35) 결론적으로 최철영은 남북간에 "평화 및 우호

³⁴⁾ 최철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정책대안," 민주평통 및 국제법학회 공동주최,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토론회>, 2003년 3월 28일.

³⁵⁾ 최철영, 위의 논문, 53쪽.

협력증진 조약"의 체결로 족하며, 이러한 남북간 평화협정의 체결 자체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임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민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평화협정에 큰 비중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자 안보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인 통일과정의 유리한 환경조성과 관련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6자회담 등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그것이 곧 평화협정의 형식으로 나타나야 될 필요성을 뜻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36) 비교적 오래 전인 1994년의 저서에서 김명기는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고 16개 참전국가들과 중국 및 러시아가 보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논한 바 있다. 37)

문정인은 "4자회담을 통해 남북이 맺은 평화협정을 미국과 중국이 보장한다"(a four-party talks where inter-Korean peace treaty can be guaranteed by China and the United States)는 개념을 제안했는데,³⁸⁾ 이것은 1990년대 김영삼정부 안팎에서 자주 거론되고 그 이후에도 남북당사자주의와 함께 집요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2+2 평화협정론"의 요체이기도 했다.

박명림은 그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른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협정안은 모두 14장, 총 47조에 이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남북한이 해야할 행동과 의무에 대한 규정들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제12장 "한반도 평화협정의 국제적보장"이라는 제목하에 제41조는 "(下記署名) 이상의 평화협정 합의에 대한 남과 북의 충실한 이행을 확인하고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과 중국은 본 평화협정에 하기서명(postscript)한다"고 하였으며, 제42조는 "(하기서명과 당사자성) 미국과 중국의 하기서명이두 나라로 하여금 남과 북이 갖는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성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였다.39)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남북한에 국한하며 미국과 중국은 보장자로서만 이 협정에 관여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는 형식과 내용을 취하고 있다. 박명림은 이런 '2+2'의 협정틀을 '남북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들어 본격적으로 거론했으며, 이는 한국 시민사회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들 논의의 공통점은 남북한과 미국이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든 미국이 협정당사자로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방식의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광범하게 회자되는 협정개념이 '남북한이 직접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은 보장자의 위치에 서면 된다'는 논리를 담은 "2+2"의 논리였다. 2000년대 들어 부시행정부가특히 초기에 북한과의 직접협상의 결과물인 제네바 북미합의를 파기하고 그러한 북미직접협상을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천명하면서, 2+2의 논리는 한국 안팎에서 더욱 풍미했다. 북미협상이 항구적으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서 남북이 체결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을 그에 대한 보장자로서 이끌어들이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언뜻 차선의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비쳐졌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을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코 차선이 아닌 최선이었으며, 남북한이 체결당사자가 되고

³⁶⁾ 조민, 〈평화통일의 이상과 현실〉, 서울: 백산서당, 2004, 특히 136-139면.

³⁷⁾ 金明基. <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서울: 국제법출판사, 1994, 특히 125-126면 참조.

³⁸⁾ Chung-in Moon, "Security Pragmatics for the Korean Peninsula," Partnership for Peace: Building Long-term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Second Collaborative Workshop on East Asia Regional Security Futures, 2001. http://www.nautilus.org/archives/nukepolicy/worshops/shanghai-01.

³⁹⁾ 박명림,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평화," 한국인권재단 엮음, <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 아르케, 2004.

미국과 중국은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므로 이것이야말로 자주적인 방식이라는 정당화까지도 덧붙여지곤 하였다. 1990년대에 한국정부가 북미평화협상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그에 대한 '자주적 대안'으로 내세우며 제시한 "당사자주의"라는 논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다.

(2) 남한당사자론에 대한 북한의 거부는 본질적인 것이었는가

당사자주의를 내세우는 주장들은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체제 성립에 근본적인 걸림돌을 북한이 남한의 협정참여를 반대하고 미국하고만의 협정체결을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가장 커다란 반대자가 미국이었다는 사실은 간과하였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은 물론 정전협정이 규정한 바 있는 외국군대의 철수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북한은 평화협정의 핵심요건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언제나 거론했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 때문에 평화협정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과 한국정부가 내놓는 가장 중요한 거부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평화협정체제는 정전협정에서 다루어진 핵심사안들의 더 한 층의 진전된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완전철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관한 일정한 정치적 타협점을 찾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이 과거에 북한이 요구해온 평화협정체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주한미군의문제에 대해 북한과 협상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임은 명백하였다.

평화협정체결은 곧 미국과 북한 사이에 주권국가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바로 이 점에서 그러한 정치적 선택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체제 전환에 응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핵심이유였다. 이것이 한반도에 평화협정체결이 되지 않아온 근본이유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협정 성립에의 최대 장애물이 북한이 한국에게 정전협정 비서명을 이유로 협정당사자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북한에게 있어 협정체결의 당사자로서 한국이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북한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제안해온 평화협정체결의 양식이 변화를 보여왔 다는 사실은 그 점을 확인해준다. 북한은 1960년대에는 남북평화협정체결을 제안한 바 있 었다. 4.19이후 분출된 남한내부의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론의 발흥에 자극받은 것으로서, 남북한 자주적 노력에 의해 1950년대에 이루어진 중국군의 철수처럼 주한미군 역시 철수하 는 상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기초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북한의 희 망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이르면서 더 높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 10월 유신 이 단행되고 반공체제를 강화하며 남북의 체제가 서로 더욱 경직되면서 북한의 평화협정주 장은 체결당사자를 남한이 아닌 미국으로 변경한다. 그러나 다시 1984년 북한은 한반도평 화체제구축의 틀로서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3자회담을 제안한다. 남북간에는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동시에 북미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한편으로 보면 평화협정체결 당사자로 북미 양자만을 거론한 것은 1974년이후 북미평화협정론의 연장으로 변화가 없어보이지만, 다시 남한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당사자로 포함시켜 거론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1991년 12월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이 상호불가침에 합의하 고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 또한 평 화체제구축의 당사자들로서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래의 평화협정 을 포함한 평화체제구축에서 남한의 참여를 북한이 수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내포되

어 있었다. 북한은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역사적인 분수령을 넘어선 후이루어진 북미고위급접촉의 결과였던 2000년 10월 12일의 북미공동성명에서 한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에 동의했었다. 또한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배제하고 있던 2003년 7월 초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및 중국과 함께 한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40)

당사자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북한의 그러한 변화를 변덕이나 비일관성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에게 한반도평화협정은 주한미군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한당사자의 문제는 근본적인 요소가 아니었다. 이미 지적한 바에서 드러나듯이,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 등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핵심당사자로서 남북한 공동의 자격을 인정한 역사적이고 분명한 예들이다. 따라서 2004년 5월 주유엔 부대사 한성렬이 <유에스에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한과 미국이 정식 당사자로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3) 한반도 평화협정이 4자간 협정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는 이유

과거 시기에 한국정부 안팎에서 '당사자주의'가 남북평화협정 또는 2+2 형식의 남북평화협정의 형식을 통해 미국의 직접적인 협정참여 거부를 정당화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보수진영 일부에서는 북한은 미국이 아닌 유엔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미국의 직접적인 협정참여와 그에 따르는 국제법적 의무부담회피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래리 워쩔(Larry Wortzel)은 이 재단이 2001년 5월에 펴낸 한 정책보고서에서 한국전쟁을 끝낸 정전협정에 서명한 미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Mark W. Clark)는 미군사령관이 아닌 유엔군 사령관의 자격으로 한 것이므로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해야 한다면 유엔 대표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41)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전쟁에 참여한 19개 국가들 중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평화협정체결의 주요 당사자들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광범하게 받아들여지는 합의다. 한국전쟁 자체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수준, 그리고 휴전이후 반세기에 걸쳐 한반도 정전체제에 지속적인 개입의 수준에 기초하여 그같은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며,42) 이것이 가장합리적인 정리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에 직접적인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왔으나, 북한의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의 근본적 당사자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참여를 고집해왔다. 반면 중국의 참여를 북한이 거론한 적은 없다. 중국군사령관 팽덕회가 서명했으나, 현재 북한에 중국군이 주둔하지 않으며 북한의 군사주권은 중국이 아닌 완전한 북한의 것이라는 의식이 그 배경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평화협정체제 구축이 북미

⁴⁰⁾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이같은 제안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남한과 일본을 포함하는 5자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Dong-A Ilbo*, July 3, 2003.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http://korea.ahrchk.net) posted on 2003-07-04.

⁴¹⁾ Arthur Bright,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U.S., China, and both Koreas agree to launch talks for a peace treaty to replace 52-year cease-fire,"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August 9, 2005.

⁴²⁾ 한 예로, "A Comprehensive Resolution of the Korean War," Special Report 106,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http://www.usip.org.

양자간의 협상, 또는 남북한 및 미국간의 3자협상으로 좁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남북한이 4자회담의 과정 속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타결해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43) 중국은 한반도 질서에 대해 미국 못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는 점이 우선 그 전반적인 배경이겠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내포하는 한반도내 미국 군사력과 한미동맹의 미사일방어망체제구축과 같은 군사전략의 향배에 일정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이 협정의 핵심부분일 것이므로 그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약속과 이행을 보장하는데 중국의 직접적인 의무와 역할을 원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역시 한반도 평화협정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한 중국 역시 직접 참여하는 구성을 원할 것이다. 중국의 참여는 한편으로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방어망구축 등의 노력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요인이므로 미국이 경계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참여를 모두 수용하고 유도함으로서 오히려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 모두에 군사적으로 무해한 지역으로 전환하는데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이 1996년 제주선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사이의 4자회담을 제안하고 또 진행된 전례가 있으므로,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거론한 "적절한 별도의 포럼"이란 남북한과 중국, 미국 등 4자로 구성된 회담으로 가닥이 잡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공동성명의 취지와 2004년 2월 제2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시사하기 시작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의 틀은 미국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참 여하는 형태를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전히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 자격을 둘러싼 논 란이 진행될 수 있으나, 이로써 남북간이든 북미간이든 양자적인 틀 또는 2+2의 형식과 같 은 의사(擬似) 양자틀을 주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 될 수 있다. 대체로 4자회담을 통 해서 그리고 그 4국이 모두 직접적인 협상당사자로서 참여하는 평화협정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대안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이 남북한 및 중국과 더불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의를 밝힌 것은, 그것 자체가 한국정부와 그 주변에서 제시해 온 "2+2"의 논리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어야 마땅하다. 2+2의 형식과 그 논리는 애당초 논 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갖는 근본의의에 비추어볼 때, 미국이 3자간이든 4자간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진지한 자세로 평화협정체결에 임한다고 할 경우 미국도 단순히 남북협정에 대한 보장자로서가 아니라 협정의 한 당사자로서 참여하 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었다.44)

그러나 향후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당사자로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는 북한 의 핵폐기를 관철하는 일과 그에 대한 동시행동의 틀로서 평화협정을 어떻게 연결지을 것인가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논란이 전개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폐기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이 평화협정에 당사자로 참여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일 것이며, 한국정부 역시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뒷받침하려 노력할 것이다. 평화협정에 앞

⁴³⁾ Su Hao, "The Unification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ism in East Asia," in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and Prospect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Symposium b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orea Press Foundation, and Korean Information Service, November 2, 2000, pp.76–77. Quoted from Choon Heum Choi, "China and the Korean Peace Process," Friedrich-Ebert Stiftung, June 2001.

⁴⁴⁾ 이삼성(2004), "미국의 대북한 정보평가 및 정책의 신뢰성 위기와 북핵문제 해결방향: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가 유일한 대안인 또 하나의 이유," 앞의 논문, 특히 58-68면 참조.

서 6자회담의 합의로서 북한의 핵폐기를 먼저 일정하게 관철하고자 하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목표는 평화협정의 성격과 그 당사자 문제를 둘러싼 오래된 논란을 되풀이하는 양상을 언제라도 보여줄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당연히 자신의 핵무기 폐기의 전제, 또는 그를 위한 미국의 동시행동의 요체로서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북한은 평화협정을 통한 외교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와 1994년 제네바합의에 의한 북한 핵동결의 대가로 미국이 약속한 경수로 건설 이행을 내세우는 태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폐기와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의 폐기를 '행동 대 행동'으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는 미국과 북한 및 남한 사이에 많은 논의와 함께 상당기간 긴장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긴장국면에서마다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며, 또한 그런 때일수록 남한정부는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당사자간의 문제라는 오래된 주장을 다시 꺼내서 미국의 입장을 측면지원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45)

(4) 여전히 계속되는 2+2의 논의

미국이 자신의 대북한 적대정책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동시에 해소하는 정치외교 적 타협으로서 평화협정을 선택한다면, 미국이 그 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 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의를 밝힌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권 일부와 학자들 사이에서는 남북당사자주의와 함께 그 변형인 "남북 이 평화협정의 직접체결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그것을 보장한다"는 2+2의 논리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46) 이러한 지적 풍토는 향후 전개될 수 있는 평화협정 협상국면에 서 한국내 인식의 혼란을 지속시키면서 협정실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여전한 것처럼 보인다. 열린우리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5년 8월 18일 의원칼럼난에 올려 진 임종석의원의 "2+2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다"는 글은 1990년대뿐 아니라 오늘에 이르 기까지도, 한반도에서 가능하고 바람직한 평화협정의 틀에 관해 그 논리가 가진 현실적 호 소력과 함께 그에 대한 한국 지식인사회의 무비판적 수용이 얼마나 광범한 것인가를 상기시 켜준다. 임종석은 "한반도평화협정은 남북한의 주도성과 국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남과 북이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는 <2+2 평화협정>이 실현가능성 과 효과의 면에서 선택가능한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논리의 근 본적인 결함은 "남과 북이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리고 국제법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현실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가에 대해 깊이 고려하지 않고

^{45)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은 외교통상부 차관보 송민순이 2005년 10월 20일 "한반도평화협정은 남북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에 관해서는 그들이 휴전협정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했다. 송민순의 이같은 남북당사자주의 재론은 같은 날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제4차 6자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거론해오던 북한방문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보인다. 평화협정과 경수로제공에 앞서 북한의 선핵폐기를 관철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한국은 '남북당사자주의'라는 오래된 무기로 지원사격하는 꼴이었다.

⁴⁶⁾ 임종석, "2+2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의원칼럼, 2005년 8월 18일.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에 긍정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남북 당사자 및 미중 보장자" 형태의 주장의 또 한 예는, 박명림, "'돌이킬 수 없는 평화' 굳히려면," 〈한겨레〉, 2005년 9월 21일. 박명림은 이 글에서 "남북이 직접 체결하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재론했다. 박명림은 또한 북한은 여전히 "미국 유일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입장의 유연성을 간과하고 있는 주장으로 생각된다.

있다는 점이다. 실현가능성과 효과라는 두가지 측면 모두에서 2+2의 틀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여기서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이 논리가 지난 10여년간 한국정부와 한국 안보관련 전문가집단이 주창하고 또한 미국이 음양으로 동조하는 가운데, 미국을 협정의 한 직접당사자로 포함하는 협정틀을 거부하는 태도가 아직도 여전히 뿌리깊다는 사실을 통감하기 때문이다.

(5) 실현가능성과 실효성 있는 협정틀, 그리고 '보장자'가 아닌 '협정당사자'로서의 미국

어떤 협정틀이 실현가능하고 실효성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미국이 부득이 이에 응하게 된 이유의 핵심이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북한은 체제안전의 마지막보루로 핵무기프로그램과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에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그것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 보장을 내걸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의와 그 실효성 문제를 판단하는 핵심포인트이다. 국제법적 규범력을 갖는 평화협정틀에 의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는 평화체제 안에서만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개발에의 의존을 포기하는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취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북한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리고 만일 2005년 7-9월의 현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체결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진지한 것이라면 미국은 바로 그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점이 왜 '실현가능한 평화협정틀'의 성격에 중대한 함의를 갖는가. 북한이 자신의 체제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는 대량살상무기체제 개발을 포기할만큼 북한에 평화보장의 규범력을 갖는 평화협정은 그 틀이 3자가 되든 4자가 되든 미국이 북한에 대한 평화보장에 관해 이행할 의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협정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국제적인 사법적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지속해온 1990년대 초 이후 부시행정부하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인식하는 군사적 위협의 실체는 남한이 아닌 미국이다. 한반도 안과 밖에 존재하는 미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자체이다. 이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및 지위에 대한 미국 자신의 전략과 정책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임은 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적대정책해소를 약속받고 그 보장을받는다는 것은 "남북이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한다"는 틀로서는 가능한 것이아니다. 북한과 미국이 다같이 서로에 대해 이행해야 할 행동과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협정양식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및 남한과 함께 직접적인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실현가능한 협정틀이란 곧 미국에게도 북한에게도 각각 안보위협해소와 군사적 안전보장에 실효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미국과 한국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동시에 북한이 자신의 체제안전보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남북한 상호간의 의무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의무이행을 규정할 뿐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해 이행해야 할 의무들을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협정이어야 함을 말한다. 이 점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북한을 이 협정틀에 끌어들여 대량살상무기유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결국 북한에 최대 군

사위협의 실체로서 미국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평화협정은 북한의 안보관심사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공허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은 그런 종류의 평화협정을 거부하게 되며, 그런만큼 실현가능성 자체도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진정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형식과 내용의 협정방식에 집착하는 회담은 건돌지 않을 수 없고, 그만큼 현실성도 떨어지는 것이다. 미국 역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를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근본해소하고자 나섰을 때에는 이미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의 위협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를 원할 것이며, 이 경우 남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북한요구를 하는 형이 되는 2+2의형식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그 틀은 미국으로서도 적절한방식이 못된다.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에 응해 어떤 형태로든 평화협정체결에 진지한 자세로 나선다고 하는 것은 2+2의 형식이 아닌 북미간의 직접적인 상호 책임과 의무이행의 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남북미 내지는 남북미중 등 다자간 평화협정이 될 것이다.47)

남북만이 당사자가 되는 그런 평화협정을 꼭 맺어보는 것이 소원이라면, 그것 자체를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단 북미간에 별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기능할 때에만 긍정적인 것일 수 있다. 이 점을 인정하고 전제하는 것으로서의 남북평화협정론은 기존의 남북당사자론들과 그 근본취지가 다르다. 평화협정은 남북한 사이에서만 맺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나 또는 남북이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은 보장만 하면 된다는 2+2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논의가 된다.

그러나 이런 대안적인 의미에서의 남북평화협정은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 등의 조치들을 통해 그 실효성을 살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미국이 제기하는 군사위협 문제를 추가적으로 적절하게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안되는 남북간 협정들을 자꾸 되풀이 맺을이유는 없는 것이다.

또한 남북평화협정과 북미간 평화협정(또는 북미간 불가침협정)을 따로 맺는다고 하면, 왜 반드시 그렇게 분리해서 맺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남북한과 미국이함께 과거를 정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모두 함께 당사자로 나서서 하나의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왜 굳이 피해야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만한 설명들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협정체결 당사자는 남북만이 되고 미국과 중국은 보장만 한다"는 2+2의 주

⁴⁷⁾ 필자는 1997년의 글에서 한반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3단계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 첫 단계로 남북한과 미국 3자간의 평화협정 또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사이의 4자회담체제, 즉 4국간의 평화협정을 거론하였다. 그것이 3자회담인가 아니면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체제여야 하는가는 남북한과 미국 3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삼성,「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과 요건: 3단계 평화과정의 개념」, 곽태환 외 지음,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특히 131-133면.

필자는 그에 앞서 1995년의 글에서 '2+2'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 필자가 말한 '2+2'는 한 반도의 민족당사자들로서의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개입해온 외세측 당사자들로서 책임과 의무를 분담해야 할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이들을 하나로 묶되 이들 모두를 정식 당사자로 하는 4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필자가 사용한 의미에서의 '2+2'는 또한, 협정 당사자로서 북한이 표면상 배제해온 남한, 그리고 남한이 제외시켜온 미국을 다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안팎과 학계 일부에서 거론하는 "당사자는 남북한으로 제한하고 미국과 중국은 보장만 한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 당사자, 미중 보장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화된 '2+2'의 논리와 혼동될 여지가 많아 이후의 글에서 필자는 '2+2'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서울: 당대, 323, 363~364면 참조.

장은 아예 모든 것을 남북간협정으로 사실상 끝내자는 얘기이므로 남북이 힘을 합하여 미국을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참여시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한 축으로서가 아니라 평화지향의 책임을 가진 행위자로 나서게 만드는 노력을 원천봉쇄하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더욱이해하기 힘든 부정적인 함의를 갖게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끌어들이는 노력은 차치하고 남북간 합의인 기본합의서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남북간 공동선언, 남북평화선언, 남북평화협정이 응당 한반도 군비통제와 군축을 지향하는 원칙과 기본적인 행동강령을 포함하는 것이 된다고할 때, 미국에 의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이 남북간의 군축이라는 것이 북한의 시각에서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가.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의 부침과 요동에 언제나 뒤따라가기만 했던 한국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의 제거를 미국을 대신해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가. 북한이 그것을 믿고 이른바 '남북평화협정'에 만족하면서 대량살상무기 폐기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보는가.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이 없는 것은 미국도 당사자가 되는 협정이 아니라, 여전히 한국사회와 정치권 및 외교관들의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을 배제한 남북당사자론, 그 안일한 주장의 되풀이인 것이다.

(6) 미국과 중국을 '보장자'로 하는 협정틀의 위험성과 시대착오성

2+2의 형식의 협정양식에 따른다면 미국과 중국은 그처럼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과 의무들은 없는 가운데 남북이 상호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보장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박명림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협정'(안)의 경우 그러한 양식을 대표하고 있다.

이런 경우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에 대한 감독자와 그 이행강제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미국의 의무이행규정들이 없음으로서 공허한 문서에 불과할 뿐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남북한에 대한 합법적 감독자의 위치에 올려놓음으로서, 미국에 대해서든 중국에 대해서든 "자주"의 원칙에 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개념과도 근원적으로 배치된다.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다같이 적어도 개념적으로 동등한 주권국가들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권평등주의 원칙에 기초한 문서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2+2 협정틀이라는 논리는 19세기와 20세기 전반까지 국제질서를 지배했던 국제관계개념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21세기 한반도 평화체제의 관건의하나가 될 문서에 투영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남북이 체결하고 미중이 보장한다고 할 때, 그 보장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보장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이다. 미중 두나라가 남북한의 협정위반을 '제재'하는 방식은 두가지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남한의 행태를 감독하고 필요하면 제재를 가하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위반했을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징벌을 가하고 남한이 위반했을 때 중국이 그것을 징계하는 것이다. 어떻게 제재하고 징벌하는가. 필요하다면 군사압박, 수술적 공습도, 나아가 전쟁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설사 그런 제재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미중이 그런 보장을 강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규정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박명림

의 협정문안 모델은 미국과 중국은 협정의 내용들을 '보장'한다고만 하고 있고 다른 유사한 논의들 역시 마찬가지의 막연한 '미중보장론'이므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 어느쪽의 위반시에 미중 두나라가 이를 어떻게 제재하여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 급이 없으므로 막연한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다. 이런 경우의 막연함이란 공허한 것인 동 시에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주권국가들사이의 협정이라고는 할 수 없게 된다.

만일 보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하면 그 수단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2+2의 양식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자신들이 협정의 체결당사자로 되는 실질적인 4자협정이 된다. 다만 내용상으로 이들 두 강대국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행해야할 행동과 의무의 내용은 없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한 감독과 보장의 권한만을 가진' 19세기적 불평등조약의 성격을 여전히 내포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남북한과 미중 두 나라의 위상과 책임의 내용이 위험한 불평등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불평등이 보장된 내면적 2+2'의 틀이 되고 말 것이다.

(7) 미국이 '보장자로 서명'한다는 개념의 납득하기 어려움

미국이 어떤 평화조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그 협정에 '보장자'로서 서명하는 일은 없다. 당사자로 참여하여 서명하고 상원의 비준을 받아서 국제법적 책임을 지든지, 그렇지 않은 다른 당사자들의 협정에 미국이 막연한 '보장자'로 서명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어떤 전쟁의 교전당사국이었던 경우 그 전쟁을 완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는 자신이 응당 당사자로 참여해 서명했다. 48) 그런가 하면 미국이 어떤 분쟁의 교전당사국도 아니고 미군이 주둔한 지역도 아니지만 미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의 분쟁일 때, 미국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으로서 서명하는 일은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서명한 협정의 마지막에 "이것을 보장한다"는 막연한한 줄의 문장과 함께 "보장자로서 서명"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1993년 8월 2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종 합의되고 같은 해 9월 13일 워싱턴 디시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사이에 서명된 '오슬로협정'(Oslo Accords)은 미국 역시 중재자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미 국무장관 워렌 크리스토퍼는 러시아 외상 안드레이 코지레프와 함께 '증인'으로 서명했을 뿐, 그 협정에 "보장자로 서명"하지는 않았다.

1994년 10월 26일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The Jordan-Israeli Peace Treaty)에는 요르단왕국 수상 압둘 살람, 이스라엘 수상 이스작 라빈과 함께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증인'으로 서명하였다.(Witnessed by William J. Clinton) 1978년 9월 17일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와 이스라엘 수상 모나켐 베긴 사이에 체결된 '캠프 데이비드 협정'(Camp David Accords) 역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증인'으로 서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미국이 "증인"으로 서명을 하는 것은 미국이 그 협정들에 대한 '보장자로서 서명'한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반도평화협정에 관해 우리 사회 인구에 회자되는 2+2 개념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중국과 함께 그 협정의 이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나라의 보장자로서의 자격을 협정 내용에 명시하여 놓는다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⁴⁸⁾ 베트남에서 미국이 제국주의전쟁을 끝내고 물러나기 직전인 1973년 1월 27일 서명된 '파리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의 정식 당사자로서 서명한 것은 미국(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 남베트남인 베트남공화국(외무장관 트란 반 람), 북베트남인 베트남민주공화국(외무장관 구엔 두이 트린), 그리고 보통 베트콩으로 불렸던 남베트남 혁명세력인 '남베트남 공화국 잠정혁명정부'(외무장관 구엔 티 빈) 등 넷이었다.

이 때 "보장"한다는 것은 단순한 협정체결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것일 수 없다. 보장자로서 서명한다는 것은 협정 당사자들이 체결후 협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한 제재를 통해 그 협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 된다. 그러 나 미국은 남들의 협정에 '증인으로 서명'하는 일은 있어도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협정에 미국이 그러한 막연한 채로 명확히 정의되지 아니한 "보장"의 책임을 지면서 '보장자'의 자격으로 서명하는 형식은 존재할 수 없다.

미국이 남들의 협정에 증인으로 서명할 때, 그것은 증인의 역할로 끝난다. 위에 예시한 미국이 증인으로 서명한 협정들의 내용에는 미국이 이행할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은 단하나도 없으며, '미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미국 의회가 이런 협정을 비준하는 절차는 취하지 않는다. 즉 미국은 그 협정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요르단과 이스라엘 어느 쪽이든 양자간의 평화협정을 위반할 때 미국이 그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어떤 보장의 역할을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비준을 하는 절차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체결하고 미국이 '보장'을 한 협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처럼 다른 나라들이 체결한 협정에 단순히 증인으로 서명한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이 협정의 이행을 보장한다'면서 증인 아닌 보장자로 서명하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그런 종류의 협정양식을 미 의회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성립할 수 없는 협정양식이다.

한반도에서도 미국이 어떤 협정에 서명한다고 하면 당사자로서 서명을 하는 것이지, 남들의 협정에 '보장자'로 서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 의회는 그런 형식의 한반도 협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장하고 어떤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비준을 하겠는가. 한국전쟁의 교전당사국의 하나이며, 한반도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 당사국으로 행동하든지 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보장자'로서 협정에 참여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 형식도 내용도 가당치 않은 이상한 문서가 되고 마는 것이다.

(8) 캠프 데이비드 협정. 그리고 '중재자'와 '증인'으로서의 미국

한반도 평화협정을 말할 때 국내의 일부 학자들은 미국을 단지 '중재자'로 옆으로 비켜서게 하면서 동시에 그 협정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예로 드는 경우가 있었다.4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1973년 전쟁이후 시나이반도를 사이에 두고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1978년 협정이었다. 이것이 성사되는 데에 미국은 중재자로서 행동했으며, 증인으로 서명했다. 미국은 1967년 전쟁에서도, 1973년 전쟁에서도 교전당사국이 아니었다. 또한 이후 군대를 주둔시키지도 않았다. 이런 경우 미국은 왜 중재했으며, 또한 증인으로 서명했는가. 과연 이것이한반도 평화협정에 한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캠프 데이비드협정은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정식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1년 전에 맺어진 것이었다. 두 나라를 당사자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앞선 '기본합의'었던 셈이다. 그 기본합의를 미국이 중재하고 증인으로 서명한 핵심적 이유는 수에즈운하와 붙어있는 시나이반도에서 미국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 지역에서 이집트와 이

⁴⁹⁾ 문정인, "국제질서의 개편과 한반도 통일: 갈등관리론의 시각에서," 한국정치경제학회 주최 학술발표회 <세계화시대의 통일한국구상>, 1994년 12월 12일.

스라엘 양국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동시에 향후 두 나라의 군사적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수에 즈운하를 둘러싸고 있는 극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립하고자 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미국은 그 협정에 당사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협정과 관련해 미국은 어떤 의무도 지지 않을 수 있었고 따라서 자신은 어떤 행동제약의 책임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수에즈운하가 있는 이 지역을 지배했던 구 제국들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과 미국이 이 지역을 둘러싸고 1950년대에 벌인 긴장상태를 기억한다면, 수에즈운하와 시나이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중재자가 미국이었다는 사실은 국제정치사에 하나의 이정표 같은 것이었다고 할만하다. 미국은 이 지역 질서의 공식적 주재자(主宰者)임을 자임하고 또한 그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타결된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을 당시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는 "불법적인 협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협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엔의 군사력 사용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50) 이 협정이 가진 국제정치적 의미를 드러내는 한 단면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 체결과정에서 시나이반도를 둘러싸고 이집트의 군사적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동시에 미국은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 및 가자 지구 같은 팔레스타인 거주지역들에 관한 입장에서 이집트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시나이반도에 관련해 이집트에 지나치게 양보를 하게 될까보아 매우 우려하였다. 시나이반도를 사이에 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안보와 평화의 문제는 응당 주권국가들인 두 나라들사이의 문제였지만,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평화과정이 양자간 협상으로 흐르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였다. 이것이 미국이 캠프 데이비드협정을 중재하고 증인으로 서명한 진정한 이유였다.51)

그러므로 만일 남북당사자론자들이 미국이 중재하고 증인으로 서명하는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두가지 의미에서 부정적이다. 첫째, '남북이 주체'가되어야 한다면서 왜 미국을 중간에 개입시키며 중재를 의뢰하는가? 남북당사자론이 전면에 내세우는 명분과 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둘째, 중재 및 증인서명이란 형식으로 미국이 한반도 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이 글에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정전상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서 미국이 져야 할 책임과 행동의 의무는 전혀 명시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협정체결 이후에도 그 이전처럼 자신의 군사전략적 행동의 자유는 전혀 구속되지 아니하는 행위자로 남는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 남한에 대해서는 자신의 관점과 이익을 담은 조항들을 권고하고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당사자임을 피하고 '중재'만 하는 평화과정은 미국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은 없고 자신의 행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른바 '남북당사자들'에 대해 미국이 요구할 것은 최대한 요구하는 과정으로 되고 마는 것이다.52)

미국은 단지 중재만 하면 된다고 하는 주장은 그런 형태의 미국의 위치를 앞장서서 보장해주자고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것을 진정 원하는 것인가. 그것을 두고 '남북 주체'라는 말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균등한 책임을 져야 하며 증인으로서가 아닌 당사자로서 서명함으로써 남북한과 함께 의무이행의 당사자로 행위해야

⁵⁰⁾ Jimmy Carter, Keeping Faith: Memoirs of a President, Toronto: Bantam Books, 1982, p.255.

⁵¹⁾ Kenneth W. Stein, *Heroic Diplomacy: Sadat, Kissinger, Carter, Begin, and the Quest for Arab-Israeli Peace*, New York: Routledge, 1999, 특히 p.232 참조.

⁵²⁾ 중동의 예를 들어 미국을 중재자로 하는 평화협정이 한반도에도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필자는 1995년의 글에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앞의 책. 36-365면 참조.

하는 것이다. 미국이 당사자로 되는 협정이야말로 '남북이 주체'가 되는 내용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9) '로카르노조약'은 2+2와 같은 강대국보장형인가: 비유의 허구성

한반도 평화협정의 한 가능한 양식으로서 남북이 체결하고 강대국이 보장하는 국제조약의 한 예로 로카르노조약(Locarno Treaty)이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다.53) 정부 일각의 인식 이 또한 그런 것 같다.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렇게 말하 고 있다: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는 첨예한 정치적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북한은 정전 협정의 서명당사자 논리에 따라 북한과 미국이 주체가 되는 양자간 평화협정을 주장한다. 반면 우리는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된 평화협정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54) 이어서 평화협정의 보장방법으로 네가지를 드는 가운데 그 첫 번째로 '보장조약형'을 거론한다. "분쟁당사국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 혹은 관 련 강대국들이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한다. 그 사례로 이 통일부 홍보사이트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독일/벨기에, 독일/프랑스간의 불가침을 보장하기위해 체결한 로카르노조약을 들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과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중 동의 평화체제 구축 사례를 제시한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1973년 10월 전쟁을 끝낸후 1979년 캠프 데이비드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한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중재노력을 통한 당사자들의 평화협정체결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것 은 그간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인 남북당사자주의의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리임을 알 수 있다. 평화협정은 분쟁당사자들이 체결하는 것이며, 강대국은 '보장' 또는 '중재'의 역할만 맡으면 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당사자주의 논리는 한국전쟁에서 분쟁당사자로서의 미국의 역할과 의미를 배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냉전과 탈냉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의 결정력, 특히 1990년대 이후 미국이 고립된 약소국들에 전개해온 첨단전쟁과 핵공격을 포함한 선제공격전략의 위협 속에서 북한이 미국을 자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실체로서 인식해왔다는 사실을 거의 전적으로 무시하는 논리이다. 그러기에 공허하고 비현실적이다.

로카르노조약을 들여다보자. 로카르노조약은 분쟁당사국들이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러한가. 1925년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체결된 이 조약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모두 7개 나라들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협정들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독일이 인접한 프랑스와 벨기에 두 나라와 불가침을 약속하고, 영국과 이탈리아는 유사시 침략을 당한 나라를 돕기로 하는 '보장자'(guarantors)로 행동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서 1925년 10월 체결된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영국, 및 이탈리아 사이의 상호보장 조약"이라고 불리는 것이다.55)

⁵³⁾ 예를 들면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에는 "통일문답"에서 평화협정의 보장방법을 거론하면서 강대국에 의한 '보 장조약형'으로 독일/벨기에, 독일/프랑스간의 불가침을 영국과 이탈리아가 보장하는 '로카르노조약'을 들고 있 다. 아울러 '유엔보장형' 그리고 '다자간 지역안전보장형'을 거론하고 있다. http://unibook.unikorea.go.kr.

⁵⁴⁾ http://unibook.unikorea.go.kr(2005년 9월 27일 현재).

^{55) &}quot;Treaty of Mutual Guarantee between Germany, Belgium, France, Great Britain and Italy"(October 16, 1925; The Locarno Pact), The Avalon Project at Yale Law School, http://www.yale.edu/lawweb/avalon. 프랑스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와 각각 별도의 협정을 맺어 독일에

이 조약은 두가지 점에서 한반도평화협정을 남북이 체결하고 미중은 보장하는 역할로서 '하기서명'만 하면 된다는 2+2의 협정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다른 종류의 것이다. 첫째, 이 협정의 양식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가 체결하고 영국과 이탈리아는 보장자로서 서명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우선 체결자가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모두 공동의 협정체결자(contracting parties)로 규정되고 있다. 협정의 내용은 결국 독일과 벨기에,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국경의 상호불가침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들을 규정한 것이지만, 최초의 공격자에 대하여 공동행동을 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정문안 전체가 그 5개 협정체결국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5개국 모두 동일한 자격으로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 자체는 3+2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직접체결자와보장자를 협정의 양식에서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평화협정을 남북이 체결하고 미중이 보장하는 의미의 2+2의 형식을 주창하면서 그 선례로서 로카르노조약을 거론하는 것은 타당한 비유가 아니다.

둘째, 로카르노협정이 그 내용에 있어 3+2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반도 평화협정에 투영하여 2+2의 양식으로 하고자 한다면, 로카르노의 경우 체결당사자가 독일이라는 잠재적 최강국과 상대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던 벨기에와 프랑스였으므로, 그 논리를 한반도평화협정에 적용한다면 2+2에서 직접체결 당사자는 상대적인 약자인 북한, 그리고 북한이 선제공격위협을 느끼는 상대인 미국이어야 한다. 로카르노협정에서 보장자 역할을 했던 영국과 이탈리아는 한반도의 경우에는 남한과 중국이 되는 꼴이 된다.

이러한 논리적 비평을 하는 이유는 북미협정체결에 남한과 중국이 보장을 하는 형식의 2+2의 틀을 취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니다. 한반도평화협정이 남북이 주체가되어 체결하고 미중은 보장자로서 서명만 하면 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로카르노조약을 끌어들이고, 그 조약이 마치 약소국 분쟁당사자들이 체결하고 주변강대국들은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한반도평화협정이 2+2의 양식을 취해야 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의 비논리성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로카르노조약은 독일과 벨기에,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간의 상호불가침을 영국과 이탈리아라는 주변국가들이 보장한 조약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반도평화협정 역시 남북이 체결하고 미중이 보장한다 해도 불평등조약이라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큰 오해이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불가침의무이행의 당사자들인 독일, 벨기에, 프랑스 어느 나라에게도 잠재적 공격자로 간주되지 않았다. 만일 영국과 이탈리아가 그 어느 한 나라에게라도 잠재적 공격자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이 조약이 맺어졌다면 영국도 이탈리아도 불가침조항의 당사자로 되는 것이며 더 이상 보장자의 위치는 아니게 되었을 것이다. 한반도평화협정이 북한에 의해 집요하게 촉구되고 미국이 응할 수 밖에 없게된 데에는 미국이 북한과 상호불가침의무 이행의 당사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여 북한을 비확산체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그 점을 인정할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다른 나라들 사이의 불가침 공약의 보장자가 아니라, 미국 스스로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불가침의무의 당사자의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평화협정 당사자

공격을 당할 경우 상호원조하기로 하는 조약을 맺었다. 이 역시 로카르노협정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이 일련의 로카르노협정들은 독일 주변의 나라들이 독일의 위협으로부터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영국과 이탈리아가 유럽의 세력균형파괴 방지를 위해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 것이었다.

일부 남북당사자론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를 남북한에 국한하는 것은 더욱 충분하게 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이 질문은 곧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잠재적 공격위협이 한국군대에 대한 전시작전권에 의존하는 것이었는가라는 것으로 된다. 결론을 말한다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의 유리한 한 조건일 뿐 그것의 전체는 아니다. 첫째,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미국은 유사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한국군을 활용하는 데 전시작전권 상실이 큰 장애가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더더욱 그렇게 믿을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비밀프로그램여부에 대한 정보평가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왜곡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유사시'를 규정할 때 한미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하여 한국군대를 미국이 주도하는 전시상태로 이끌어들이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상실여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둘째, 미국이 북한의 군사위협을 부각시키고 그것이 미국의 핵심동맹인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및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안보나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미일 군사동맹을 전시체제로 돌입시킬 때,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북한은 생각할 것인가. 전시작전권환수는 응당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서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북한에 대한 불가침의무 이행 당사자로서의 미국의 위치가 종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셋째, 1990-91년의 걸프전쟁과 1998년 코소보전쟁으로 확고해진 미국의 첨단전쟁능력의 절실한 인식, 그리고 특히 2001년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쟁 시리즈 이후 미국의 이른바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위한 선제공격과 핵무기의 적극적 활용정책으로 북한이 인식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잠재적 군사위협은 더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이같은 군사행동능력은 불량국가로 지목된 나라의 이웃국가들과의 동맹을통해 그들의 군사협력을 확보해내는 능력에 큰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이이만, 그 동맹국들의 군사협력을 확보해내는 미국의 능력은 그 동맹국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권 없이도 충분히가능했다. 그만큼 북한이 미국을 불가침의무 이행당사자로 간주하는 상황은 한국군에 대한미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11) 평화협정과 민족자주의 문제

한반도 평화협정이 남북미 3자간이든 남북미중 4자간이든 미국을 실질당사자로 포함해야하고 또 실현가능한 동시에 실효성 있는 평화협정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평화협정의 체결과정에서 그동안 핵문제 협상이나 미사일협상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북미협상이 기축이 되는 4국 협상의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한반도평화협정은 어차피 북미간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다.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북한이 자신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안전의 행동의무를 받아내고자 하는 대상은 다름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향후 한반도 평화협정의 본질이기 때문에 남한의 입장에서도 협상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실질적인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이행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위협과 그로 인한 긴장지속과 전쟁의 가능성을 원천차단해낼 것인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협상의 내면의 핵심에는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상을 어떻게 촉진하고 어떻게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근본숙제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협정은 그 기축이 북미협상의문제이며, 한국과 중국의 역할은 그것을 촉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동해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더 깊은 내면에는 남북한의 대화축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의 국제규범화를 추구한다는 의의가 담겨있다.

둘째, 언뜻 보면 평화협정도 남북협상이 기축이 되어야 자주적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협정당사자가 아닌 '보장자'의 위치로 비켜서 게 하는 2+2의 논리가 문제의 본질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 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었던 이유다. 남북이 협상의 기축을 이루고 미국과 중국은 그 결과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면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은연중 또는 분명하게 '자주성' 을 표방한다. 그러나 이 논리는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고 그 긴장구조의 당사자의 위치로부터 미국을 비켜설 수 있게 만드는 담론적 효과를 낳는다. 이 논리에 따르면, 미국 은 한반도 긴장구조의 한 축이 아니라 그 구조의 밖에 위치해있는 것으로 된다.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기의 본질에 관한 진실의 절반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는다. 진정한 민족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반도 평화협 정의 문제는 당연히 남북협상의 문제인 동시에 그 못지 않게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불 안정과 긴장의 구조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향후 평화구조 구축에 구체적인 행동의 의무를 지는 일원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을 몇 걸음 물러서 감독하는 '보 장자'의 위치에 머물러있게 내버려두는 것은 결코 자주가 아니다. 미국 역시 남북한과 함께 구체적인 의무이행 당사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한반 도 평화협정에 대한 '자주'의 진실한 의미이다.

"다자간 협상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통일과정에서 외세개입의 가능성의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⁵⁶⁾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남북당사자들'이 맺을 일이며 그 외의 다자간 협상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의 교전당사자였으며 한반도 군사안보에 결정적 이해관계를 주장해왔고 한반도 주변의 안보질서에 기득권세력이라고 할 미국을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것을 "평화구축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논리로 배척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오류이며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분쟁에 사사건건 한미동맹을 앞세우고 일본을 끌어들이며 심지어 북한의 우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까지도 동원한 국제공조를 내세우곤 하는 한국이 과거 교전당사국들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협정에 평화이행의 의무를 지게 할 당사자로서 미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왜 "외세개입"이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외세라 하더라도 한반도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련당사국이라 할 때, 그들을 평화협정체제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관련없던 존재"로부터 이제는 "개입하는 존재"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로 하여금 남북한 어느 한쪽에 "적대함으로써 긴장구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개입해온 세력"으로부터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촉진의 행동을 이행하는 세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즉 이미 존재하고 지속되어온 그들의 한반도 개입의 양태와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인 것이다. 그것은 자주외교의불가결한 한 요소이다.

2005년 10월 하순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가 북한방문을 취소한다는 발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자, 한국측 수석대표인 외통부 차관보 송민순은 "평화협정은 남북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남북당사자주의 논리를 재

⁵⁶⁾ 조은석 외,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한 연합추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연구," 통일연구원, 2001, 49쪽, 최철 영, 앞의 글, 53쪽. 최철영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론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과의 외교공조 행태를 되풀이했다. 내용은 대북한 압박을 위한 미국과의 외교공조인데, 내세우는 논리는 '남북 주체'인 것이다. 군비강화와 군사전략, 그리고 대북한 군사훈련 등에서 언제나 한미동맹과 미국과의 공조를 내세우는 외세의존의 자세를 취하면서도 평화협정 문제에서만은 유독 '주체'사상의 신봉자로 변신하는 것은 한국외교가 아직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위선의 표상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참으로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기를 남한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미국의 적대적 정책과 군사위협에 대한 북한의 안보우려를 남한측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끔 미국 역시 평화협정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나서도록 설득하는 남북간 외교공조 역시 불가결한 것이다. '남북당사자주의'라는 것이 진정으로 '주체적'인 것이 되려고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에 생사와 존폐가 달린 당사자들인 남북한 어느 한쪽에 안보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외세를 남북간 공동노력을 통해 평화지향적 세력으로 전환시키는 외교적 원칙이어야 한다. 그 외교는 응당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의 제도적 매개가 될 평화협정에 미국을 책임있는 당사자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을 포함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12) 한국의 정관언학(政官言學)은 왜 미국을 협정체결의 당사자로 생각하지 못하는가

평화협정문제에 대해 한국정부 안팎에서 미국이 직접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을 논외로 치부하고 미국은 협정의 직접 이행의무자가 아닌, 몇 걸음 물러서 있는 "보장자"로서 간접적으로만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한국사회에서 집요하게 정당화되어온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 미국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협정은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지위와 한미동 맹체제에 불가피하게 중요한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북미 간 직접협상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평화협정 형태를 경계해왔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현상(status quo)을 결코 침범해서는 안될 성역으로 간주해온 것이다. 그 오랜 세월의 무게가 은연중 평화협정에 대한 한국의 정관언학의 인식에 짙고 광범한 그림자를 드리워왔던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 안팎에서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 일은 초강대국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지배해왔다. 미국을 평화협정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이끌어 들이는 것은 불가능해서 비현실적이다라는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2000년대 들어 부시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그같은 체념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 더욱 고착되었다. 어떻게든 미국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끌어들일 때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터부로 남겨져왔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식인사회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과 거리두기'의 사고패턴이다. 평화와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논리에 대한 원천적인 회피의식이다. 이러한 경향은 냉전시대에는 냉전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했다면, 1990년대 이후는 한국의 민주화이후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어온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비판이 확산되어온 것과 관련이 깊다. 북한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것은 피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등식이 성립해있다.

평화협정의 체결이란 곧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 남북한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

의 양상에도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이다. 그런 만큼,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핵심요소이다. 성역이요, 터부였으며 또한 북한과 '거리두기'는 모든 객관성의 기본조건이라는 팽만한 시대정신의 압박 속에서 우리의 지식인사회 역시 북한과 '거리좁히기'의 결정체일 수 밖에 없을 평화협정의 문제까지도 그 본질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왔다고 생각한다.

- 6. 한반도 평화협정의 성격과 내용
- (1) 한반도 평화협정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한반도평화협정'이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 평화협정을 통해 협정당사자들이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시킨다는 과거정리의 의미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미래지향의 의미를 분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구분의 의미는 없다. 긴밀히 상호연관된 것에 다름아니다. 전쟁의 종식은 곧 해결되지 않은 영토문제에 대한 정리, 예컨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문제가 휴전협정에서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평화협정은 이에 대한 정리를 필요로한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의 정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래 평화체제는 또한 그 영토문제에 대한 정리 없이는 미완의 것이므로 그 문제의 정리는 미래적 의미도 갖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문제 역시 미군의 주둔이 전쟁의 결과이므로 전쟁의 최종적 매듭은 주한미군의 의미와역할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 타결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역시 단순히 미래 한반도 군사질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과거 전쟁의 정리라는 의미도 갖는다. 미국은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협정을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서오늘에 이르기까지 핵문제와 함께 미국의 주요 관심사로 되어온 북한의 미사일개발 확산억지를 더욱 제도화하는 장치로 만들고자 할 것이므로 이 문제 또한 중대한 요소로 다루어질수 밖에 없다.

평화협정은 전시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때 필요한 것이므로, 한반도의 경우 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난지 이미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 평화체제의 요건들이 어느정도 형성되어있으므로 당시 전쟁 당사국들 사이에 굳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의 역할은 그런 경우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57) 그러나 평화협정은 단순히 전쟁을 정식으로 끝낸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끝냄과 동시에, 또는지속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에 장애가 되는 분쟁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면서 상호적인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합의하는 문서가 평화협정이다. 실제로 1978년의 캠프 데이비드협정, 1979년의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1993년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이의 오슬로협정, 그리고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간의 평화협정 등이 모두 그러한 목적과 내용을 갖춘 것들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로카르노조약'역시 1차대전으로 인한 독일과 유럽의 다른 나라들 사이의 전시 적대관계를 1918년 베르사유평화협정을 통해 이미 해소한 상태에 있던 1925년 독일과 주변 나라들 사이의 불가침약속의 재확인을 통해 평화를 더 확고히 하자는 목적에서 맺어진 협정이었다.

한반도의 경우 미국을 포함한 전쟁의 당사국들이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상대방에 대해 평

⁵⁷⁾ 최철영(2003), 앞의 논문.

화협정을 맺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평화협정이 갖게 될 의미를 오히려 더욱 강조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만큼 분쟁의 요인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합의함으로써 전시체제를 평화체제로 확고히 전환하면서 동시에 현존하는 근본적인 분쟁요인들을 해소하여 서로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장치로서 평화협정의 의의는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갖는 의미를 그렇게 볼 때,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우는 북한이 그것의 절실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미국이 이에 응할 용의를 갖게 된 시점과 맥락이 무엇인지가 결국 협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점에 관해 중대한 시사점이 될 수 있는 것은 2005년 8월 한국정부관계자가 익명으로 언론에 밝힌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평화체제전환에 대한 해당 국가들의 논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게 6자회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론이다."58) 그 관계자는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타결되면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평화체제 회담이나 남북한과 미중이 공동참여하는 4자 평화체제 회담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으며, "미국과 관련국가들이 평화체제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나선 것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만 아니라 북한의 요구를 장기적 관점에서 수용하면서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 안보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한국정부와 미국이 도달한 것으로 보도된 인식은 향후 남북미중 사이에 진행될 수 있는 평화협정체제의 내용의 핵심을 시사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평화협정체제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과 경계심을 제거하는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침내 미국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서 당연한 귀결로 생각한다.59)

장차 성립가능한 평화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과의 관계 를 짚어둘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4차 6자회담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이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한국측 관계자가 밝힌대로 "평화체제논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시 작되는 것이 아니라"그것을 "핵문제 해결과정"으로서 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4차 6 자회담의 공동성명이 "공약에는 공약으로, 행동에는 행동으로"(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 론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동시행동의 원칙을 일정하게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 다면 북한의 핵 해체의 과정은 어떤 형태로든 평화협정을 포함하는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미국의 상호주의적 행동과 연계되어야 함을 뜻한다. 6자회담을 평화체제구축과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공약 대 공약"의 약속,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평화체제구축을 통한 북한 핵 해체와 그에 상응하는 한미 양국의 대북한 군사위협 해소를 본격화하기 전의 신뢰 구축 차원의 행동계획에 대한 합의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한정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역할 을 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남북한과 미국이 상호주권존중의 원칙을 전제로 북한이 핵폐 기를 실행에 옮기고 그에 대한 철저한 지속적 검증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 의 안전보장의 행동--북미관계의 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 및 경수로 제공진행 등을 포함하 는--의 진행과 주한미군을 포함하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정책의 위협적 요소들을 제 거하는 행동들을 규정하는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또 그럴수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한반도 평화협정에 남북한 및 미중 네 나라가 진지하게 임한다고 할 때,

⁵⁸⁾ 최상연, 서승욱, 앞의 기사.

⁵⁹⁾ 이삼성(2004), 앞의 논문.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될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북한의 핵문제 등 대량살상 무기 폐기와 미국과 한국의 대북한 군사위협 해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 양측의 동맹관계 및 외국군 주둔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 북한 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을 연관짓는 두 가지 방법:

북한 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을 연결짓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완료하는 단계에서 그 대가로 평화협정을 제공한다는 개념이 다. 이처럼 단계적 접근에 기초해 평화협정을 최종단계에 위치시키는 것이 그간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안팎에서 거론되어온 방안들의 거의 전부였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 량살상무기 유혹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측의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남북한 군축, 그리고 미국의 대북한 외교/경제적 관계정상화 및 안전보장조치 그리고 외국군주둔문제 해 결을 포괄하는 청사진으로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사고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은 한미 두 나라가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함한 모든 핵 의혹 해소를 완료하는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북한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이 방안은 또한 북한이 핵무기폐기를 완료하기까지 평화협정체결을 미루는 동안 그 공백을 주로 경제지원으로 메꾸며 아울러 갖가지 형태의 잠정적인 대북한 안전보장을 공약하는 조치들로 대신한다. 이처럼 사실상 평화협정을 북한 핵폐기가 진행된 이후 그에 대한 선물로서 위치지우는 개념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한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를 일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북한 핵 폐기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평화협정 개념

2004년 12월 통일연구원의 한 연구보고서는 북핵문제 전개유형을 '점진적 해결 유형'과 '긴장고조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상정하고 있다.60) 4차 6자회담 개최 준비를 하는 단계 이후를 3단계로 나누었다. 돌파구 마련단계인 1단계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 의사표명과 이에 북한체제 안전보장의사 표명을 주고받는다. 핵 폐기 이행단계에서는 핵 폐기와 북한체제 잠정보장을 주고받는 단계다. 3단계는 핵 폐기 완료단계로서 핵 폐기 완료와 관계정상화를 주고받는 단계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의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의 폐기, 모든 핵관련 시설의 폐기가 완료"되는 '핵 폐기 완료단계'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항구적 안전보장 안이 채택 될 것이라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미군사안보관계 재조정과 더불어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북 간에는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고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협정체제는 한미동맹관계의 유지와 함께 중국과는 안보군사협력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2005년 9월에 이루어진 제4차 6자회담의 합의내용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1단계로서 북한의 핵 폐기 의사표명과 북한체제 안전보장의사 표명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별도의 회의개최에 합의한 것은 이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북한체제 안전보장 의사 표명'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핵폐기의 2

⁶⁰⁾ 박종철, 박영호, 박형중, 이석, "북핵문제 해결 단계별 남북관계 발전방안," 통일부 학술용역과제 연구보고서, 통일연구원, 2004년 12월.

단계와 3단계의 구분, 그리고 평화협정체결을 2단계와 3단계 중 어느 단계에 연결할 것인 가 하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핵 폐기 이행단계와 핵 폐기 완료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이행단계는 "3개월 또는 6개월의 핵동결기간 동안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중단, 핵시설 및 핵물질의 봉인, 핵무기/재료/원심분리기의 폐기를 위한 공개조치"를 이행하는 단계다. 그 공개조치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의 추가의정서 채택에 의한 의심지역에 대한 전면사찰에 반대하는 점을 감안하여국제원자력기구의 일반사찰과 병행하여 5개국 사찰단이 대북사찰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핵 폐기 완료단계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의 폐기, 모든 핵관련 시설의 폐기가 완료"되고 "이미 추출된 핵물질의 처리방안도 강구"되는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개발, 생화학무기, 인권문제 등 기타 문제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될것"이라고 상정하였다.

결국 이 연구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실제 핵 폐기 과정을 그렇게 두 단계로 나누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제공 과정 역시 단계별로 각각 "북한체제 잠정보장"과 "남북간 평화협정 및 북미간 불가침협정"으로 나누어 제공한다고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단계적접근(step-by-step approach)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은 그 과정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이러한 개념의 단계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그 합의형태는 일괄타결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동결과 북미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해제 등 미국쪽 이행을 구체적으로 연계하지 않은 것이었다. 다만 경수로의 핵심부품을 북한에 넘길 때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실시를 연계했을 뿐이었다. 그 결과 북한의 핵동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계정상화 의무이행은 여러 가지 구실로 지연되었으며, 경수로 제공 작업 역시 지연되었다. 북한은 이 점이 북한의 관점에서 제네바합의가 안고 있었던 중대한 문제였다고 파악할 것이다.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자신이 가진 협상지렛대의 핵심인 이른바 '핵 억지력'의 존재방식과 그 공개조치라는 행동을 "북한체제 잠정보장"에 맞추어 그리고 불가침협정 또는 평화협정을 폐기완료시 체결할 것이라는 "약속"에 기초해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발전용 핵시설이 아닌 핵무기 시설들을 그러한 잠정보장, 또는 약속에 연계해 사찰단에 공개하고 '봉인'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자신의 핵동결이행에도 불구하고 약 10년에 걸친 지연 끝에 미국의 일방적 조치로 합의 자체마저 파탄되고만 제네바의 경험을 되풀이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체제 "잠정보장"이란 개념은 그 구체적 내용이 제공하겠다는 측에 있어서나 제공을 받을 상대에게 있어서나 구체성을 결여한 공허한 개념이기 쉽다. 통일연구원 보고서가제시하는 "잠정보장"이란 "단계적으로 다자방식 및 미북 양자방식의 대북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1) 6자회담에서 '북한체제보장 공동합의문' 채택; 2) 미대통령의 북한체제 보장서한, 미의회의 북한체제 보장 결의문 채택; 3) 북미수교시 "북미우호협력조약"을 채택하고 이 가운데 북한체제 보장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방안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는 북미국교정상화를 핵 폐기 완료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북미우호협력조약"이란 이 잠정보장 단계에서는 하나의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 남는다.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은 "공약에는 공약으로 행동에는 행동으로"라는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했다. 이 원칙과 어긋난다는 북한의 불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 의회의 대북한 체제보장 결의문은 북한 인권법을 압도적인 표로 통과시킨 미 의회에서 북한 핵폐기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나 그 이후에서나, 그것이 설혹 통과될 수 있을 지라도, 매우 분열적인 논란과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들은 보장합의문, 보장서한, 보장결의문, 등 모두 보장을 '선언'하는 것들인데,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기관련 활동과 시설의 공개와 사찰이 일정하게 무리없이 진행되는 대가로 이러한 선언들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무효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북한의 안보관심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만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큰 한계가 있을 것이다.

(4) 한반도 평화과정의 헌장으로서의 평화협정

평화협정에 응하는 문제를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해 그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선물로서 제공한다는 개념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북미 양국간 상호주의적 보상 행동은 경제적 차원에 집중하는 것이며, 그래서 비대칭적인 성격을 갖는다. 군사적 안전보장은 행동(action)이 아닌 다양한 공약(commitment)으로 메우는 잠정적 수준의것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게 미국의 선제공격, 핵사용옵션 등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회복이라는 목표에 우선하는 절대명제이다.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적 억지력을 해체하는 과정에는 응당 미국과 한국 역시 군사적 안전보장 조치들이 동시행동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고집할 수 밖에 없다. 이와 달리 "평화과정의 포괄적 헌장" 그 자체로서 평화협정의 개념을 설정하면, 그것이 평화체제의 구축로드맵으로서, 북한의 핵폐기의 진행과 함께 남북한 군축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미국의정책수정 등 구체적인 행위들이 상호주의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북한의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을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위협의 해소로 보상하는 '대칭적 상호주의'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을 진정한 비확산체제로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평화협정 양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 폐기 최종단계에서 제공되는 공약의 완성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와 미국과 한국 등에 의한 대북한 안전보장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상호주의적으로 구축하는 행동들에 관한 청사진으로서의 의미와 내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유혹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의핵심적 목표라면 평화협정은 그 목표를 위해 관련 4개국이 취해야 할 행동과 방법에 대한가급적 구체적인 합의를 담는 것이 옳다.

이 때 평화협정 협상 시작 이전과 이후의 6자회담은 두 가지 사명을 갖는다. 첫째는 북한 의 핵무기비확산체제(NPT)복귀시점과 그 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일이다. 그 합의는 제네바합의에서 핵동결의 대상이었던 북한의 핵시설들에 대한 제한적인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북한이 수용하고 또 스스로 진행해온 것으로 공언한 핵무기관련활동 들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공약"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들을 해제하고 연락사무소 수준의 북미외교관계 개선, 그리고 미국의 대북한 무력불사용에 대한 미국정부의 문서화된 공약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설 및 활동의 완전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을 긴밀히 연결시키는 내용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정한다.

둘째, 6자회담은 그 후에도 해체하지 아니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4자회담의 진행과 연

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 긴밀한 상호의존성을 갖는 동아시아 안전보장 문제들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비핵지대화'(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s-Free Zone)를 한반도 비핵화 일정에 적절하게 조응하여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61)

6자회담과 평화협정회담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면, 북한이 제네바합의 수준의 핵동결과 사찰수용 그리고 이에 덧붙여 핵무기관련 활동의 동결이라는 '공약'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 과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행동은 6자회담의 합의문에서 정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관련 시설 과 활동의 동결에 대한 '공약'을 넘어서서 그것을 공개하고 해체하는 과정과 그에 상응해 북한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안보위협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조치들, 즉 평화체제구축의 방법 과 일정은 평화협정에서 논의되고 확정되게 된다.

이 역시 단계적 접근의 개념을 함유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관련 시설의 해체작업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그 해체작업의 최종단계에 평화협정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해소를 "공약"의 차원을 넘어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해체를 행동으로 옮기는 문제" 자체를 평화협정의 내용으로 다룬 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때의 평화협정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주요한 상호주의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들을 규정하는 '한반도 평화과정의 헌장'으로 되는 셈이다.

그렇게 해야만 북한을 대량살상무기개발과 보유의 유혹으로부터 진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자신의 안보의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고 있는 핵무기와 그 관련 시설들을 '공개'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것은 한번 행동에 옮기면 돌이킬 수 없이 노출되어 언제라도 자신의 치명적인 전략적 약점으로 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조치로서 제공하는 협정과 그에 따라 진행하는 일정한 외교적 군사적 조치들은 상대방의 위반시에 자동적으로 무효화하고 되돌릴 수 있으며 협정 자체가 자동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폐기될 수 있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1993년의 오슬로협정, 그리고 1994년 10월 이스라엘과 요르단 왕국 사이에 서명된 "요르단-이스라엘 평화협정" 등은 모두 관련 당사국들간의 상호간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세한 합의들을 담고 있다. 평화과정을 진행시키는 원칙과 방법들을 정리한 헌장이었다.

통일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평화협정을 북핵 해결과정의 최후의 일부로 위치지운데 반하여, 평화과정 헌장으로서의 평화협정은 북핵 해결과정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 속에 융합하는 행동과 조치들의 전체상을 4국이 합의/규정하는 문서임을 말한다.

이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담아내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략해볼수 있다: 1)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진척시키고 그것을 관철하고 지속하는 엄정한 검증체제를 구축하는 방법과 일정을 정한다; 2) 북미관계 정상화의 일정을 확정한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검증체제 적용시기와 강도를 북미관계 정상화의 일정과 적절하게 조웅시키되, 가급적 외교관계 정상화 일정을 앞당긴다; 3) 남북한 군축의 논의와 실행장치를 정한다; 4) 서해 5도 등 정전협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영토문제를 해소한다;62) 5) 주한미군의

⁶¹⁾ 이삼성,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서울: 살림출판사, 2005.

⁶²⁾ 서해 5도를 둘러싼 서해상 남북간 군사분계선을 정전협정이 해결하지 못한채 한미양국이 일방적인 북방한계 선을 설치하여 서해 해상 군사분쟁의 원인으로 남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리영희,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 사분계선인가?" 〈통일시론〉, 1999년 여름, 통권 제3호.

단계적 철군 일정을 정한다; 6 북한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일정을 논의하고 여기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한반도 도입 중단을 연계한다; 7) 평화체제 구축 진행일정에서 적절한 지점에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가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들 내용 전부를 한반도 평화협정이 모두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건에 따라서는 그 안건과 직접 관계된 당사국들간에 국한된 별도의 의정서 형태로 합의도출을 시도할수 있다. 위에서 예로 든 오슬로협정 역시 관련 이슈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별도의 의정서들로 보완되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평화협정을 구성하는 예로 볼 수 있겠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문제와 그것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한반도 편입 제한과 결부시키는 등의 문제들은 남북미 3국간에 또는 북미간의 미사일형상을 통한 의정서 도출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군 일정을정하는 문제 역시 남북미 3국이 동의하는 별도의 회담 양식으로 별도의 의정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권고 또는 그 일정의 문제는 한반도 군사안보와 직결되는 안건은 아니므로 다른 형태와 채널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병행할 수 있는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 해소와 주변국들의 대북한 안보위협의 해소를상호연결하여 행동에 옮기는 일정에 관한 평화협정 협상이 그러한 통합적인 또는 다중적인외교적 노력의 한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그 협정이 다른 안건들에 대한 토의와 협상을 동시에 이끌어가거나 또는 그것들에 선행하는 외교적 노력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는점이다.

(4)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에서 외세 개입 방지장치로서의 평화협정

남북한과 함께, 한반도에 직접적인 안보이익을 주장하면서 유사시 군사개입 잠재력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직접당사자로 참여하는 만큼, 한반도 평화협정은 위의 논의주제들과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과 평화통일과정에 이들 외세의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는 장치를 규정하는 기회로 삼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 비상한 상황이 발생하여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이 진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방식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한반도 평화협정은 명시하여 담을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 정착 이후에도 남북한이 각각 미국 및 중국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이 존속되는 경우, 양자간 방위조약들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와 결정을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개입은 자동개입이 아니라 미국의 헌법적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엔의 논의와 결의를 우선하는 규정이 미 의회가 비준할 한반도 평화협정에 담겨지게 되면, 평화협정의 그같은 규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우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군사행동 여부를 국제기구에 맡기는 것에 커다란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담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러나미국 역시 한반도에서 유사시 원하지 않는 시점에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과 무력충돌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 창의적인방안을 모색할 가치가 있어보인다.

(5)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상호방위조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협정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완성되고 장거리미사일위협이 제거되는 시점과 연계하여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철군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본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노력의 진정성을 확보하는데에 미국이 북한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군사위협 해소의 요건이다.

둘째,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대남한 및 대미국 위협이 제거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완성 단계에서는 미군의 주두 정당성 자체가 더욱 약해진다.

셋째,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까지 남한에 미군사력이 주둔해 있는 경우, 북한의 유사시 전지 작전권 반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국이 유사시 판단과 전쟁결정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군과 한국군의 전시체제 돌입이 발생하기 쉽다. 이 경우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며, 이후 전개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혼란과 그 결과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포함하여 상상을 불허할 수 있다. 이것은 평화체제 정착이후에도 남북한의 어느 한쪽에 외국군사력이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의 논의와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외국군사력의 한반도 재개입을 방지하는 규정을 평화협정에 담는 것이 필요함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구축 이후 한반도에서 일단 외국군대의 실질적인 철군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남한에 미군이 계속 주둔을 하더라도 평화정착 이후 한반도에서 유사시 미군을 포함하여 어떤 군사행동도 유엔이 결의한 방식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금지한다는 규정을 평화협정에 두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미군이 남한에 이미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한미군 역시 한반도 유사시에 직접 위협을 받는 당사자를 자처할수 있으므로 유엔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행동을 구속하기 어렵다. 또한 미 대통령이 미군을 분쟁지역에 군대를 파견하는 데에는 헌법상 전쟁 선포권한을 가진 의회의 역할로 인해중요한 제약이 따른다.63) 반면에 주한미군이 이미 계속 주둔해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한반도유사시 군사개입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훨씬 쉬우며 그만큼 자동적이 되기 쉽다.64) 그

^{63) 1973}년 11월, 당시 닉슨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의한 행정부의 반대를 뒤엎고, 미 의회 상하양원에서 3분의 2이상, 특히 상원의 경우 75대 18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전쟁권한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르면,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미국전투부대를 파견할 경우, 1) 24시간 이내에 하원의장과 상원부의장에게 서면으로 그 비상사태발생지역의 상황, 파견의 법적 근거, 파견규모를 보고해야 한다. 2) 군대파견후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해당지역에 대한 군대파견을 허가하거나, 또는 해당 군대파견에 의회가 법으로 60일 이상으로 파견허용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또는 미국본토가 무력공격을 당해 의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이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파견한 군대를 60일 이내에 철수시켜야 한다. 이 세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이 파견부대의 신속한 철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결정하고 그 사유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 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그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의회가 전쟁선포를 하거나 구체적인 법으로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이 해외교전지역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 의회가 어느때든지 '동의결의'(concurrent resolution)에 의하여 미국군대의 철수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위에서 정한 60일 기간 이전이라도 즉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이 부분의 "동의결의에 의한 의회의 미군철수결정 권한"은 합헌성논란에 휘말려왔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Public Law 93-148, 93rd Congress, H.J.Res.542, November 7, 1973. 이삼성,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 서울:한길사, 1993, 161-167쪽.

¹⁹⁷³년의 전쟁권한 결의안은 미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일정하게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실제 대통령의 해외군사개입여부를 결정하고 제약하여왔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미행정부는 이 결의안을 전적으로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안보관련 행위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위헌적인 결의안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결의안 통과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결의안을 둘러싼 의회 안팎의 논란과 미국 군사개입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The War Powers Resolution: After Thirty Years," CRS Report for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March 11, 2004.

런만큼 중국은 중국대로 유사시 주한미군이 주도하는 대북한 군사개입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일찍 행동에 나서면서 외세의 군사개입 에스컬레이션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그럼 상호방위조약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주한미군의 궁극적인 철군을 전제로 남북한 모두 미국과 중국과의 상호방위조약들을 유지하는 방안과 남북한 모두 조약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이 두 방안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평화협정에 명시할 것인가 여부는 평화협정 회담 가운데에서 남북한간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없이 남북한이 각각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최 철영의 주장과 같이 미래 유사시 한국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역시 필요할 것이다.65)

7. 맺음말

남북한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맺기만 하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룩된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평화협정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그처럼 힘들고 도달하기 어려운 도전이라면, 힘겨운 만큼 의미가 있고 공허하지 않은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안보관심사, 미국의 안보관심사, 우리의 안보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한반도 평화과정의 기본문서가 될 수 있도록 평화협정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폭넓게 모색하는 태도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북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해 주는 선물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의 그동안의 관성적 사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북한과 미국을 다같이 "적절한 행동양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보는 것은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와 협정문서가 단순한 종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역사의 뱡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송두리째 버리지 않는다면, 이 협정의 가능한 양태와 잠재적인 역할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정에 올바른 자세로 진지하게임하는 외교적 노력 그 자체가 이미 평화체제 구축에 불가결한 첫걸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남북한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그 협정의 실질적인 내용과 역할 또한 폭넓은 것으로 구상해보았다. 또 구체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미국과 한국의 대북한 군사위협의 문제를 연결해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북한 핵 폐기의 최종단계에 조응시키는 단계적 접근을 피하고, '평화과정의 헌장'으로서의 평화협정 개념을 모색해보았다. 이 두 개념들은 "북한 핵 폐기"의 시작과 끝을 둘로 구분하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단계적 접근에서는 시작 단계에서 북한 핵억지력의 공개와 함께 일정한 해 체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종결단계는 곧 그 핵무기에 관련된 모든 시설과 물질의 폐기를 완료하는 것이 된다. 이 종결단계의 내용은 필자가 말하는 핵 폐기 최종단계와 동일하다. 다른 점은 핵 폐기 과정의 시작을 제네바합의 수준의 핵동결 대상시설들에 대한 국제원

⁶⁴⁾ 金明基, 〈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 앞의 책, 149-150쪽 참조.

⁶⁵⁾ 최철영, 앞의 논문, 46쪽.

자력기구의 일반사찰 재개를 통해 "핵무기 폐기의 신뢰구축" 단계로 설정한다는 점이다. 이 개념에서는 미국의 대북한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북한이 공언하고 있는 '핵 억지력'의 공개에서 완전해체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평화협정 자체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된다.

이것만이 평화협정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때, 그러한 수준의 폭과 유연성을 우리외교가 담을 수 있어야 하고, 미국 역시 그러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공약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행동의 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 억지력의 해체라는 행동이 시작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진행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그 과정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그 때 평화협정은 북한에게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이 되겠는 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점을 공허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평화협정의 체결은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므로, 협정체결 이전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핵 억지력'의 공개와 해체를 포함하여 북한의 핵 폐기 작업이 조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 억지력'을 선언하고 확대하도록 미국은 몇 년을 허송세월해왔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한이 기꺼이 진정한 핵 억지력 해소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북한의 진정한 협력을 확보해낼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의 평화협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외교적 자세로 임하지 않고는 북한의 '핵억지력' 해소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채 평화회담을 지루한 또 하나의 외교적 분쟁무대 또는 결국 실패로 끝날수 있는 또 다른 시리즈의 강압외교와 협상의 널뛰기 무대로 만들면서 허송세월할 수 있기때문이다.

평화협정은 북한에 대해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 의회 상원의 비준을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국제법적이고 국내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북한이 미국으로 부터 군사적 안전보장을 받아내기 위해 평화협정에 집착하는 것은 그런 효과를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평화협정을 포함한 모든 국제규범은 언제라도 강대국들의 필요에 따라 권력정치에 유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미중 사이에 일정한 세력균형이 형성되어 있는 오늘날의 조건에서 남북한과 미중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은 일정하게 힘의 균형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국제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희망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그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평화통일에 가장 이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갖추도록 설계하고 관철해내는 외교적 비전과 노력은 소중한 의미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